

#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23. 8. 28(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





### 인사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4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6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8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0  
 윤미향 (국회의원) ..... 12

### 피해자증언

홍창성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 ..... 17  
 김동철 (보호감호 피해자) ..... 20

### 발제문

신하나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 25  
 조영선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단장) ..... 46  
 이영기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 82

### 토론문

명 속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91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전 성공회대 교수) ..... 94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04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오늘 <삼청교육대 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설훈,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홍찬선 선생님께서는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로서, 감동철 선생님께서는 보호감호 피해자로서 삼청교육대의 민낯을 파헤칠 증언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의 소중한 증언을 통해 더욱더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나눌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최세안 변호사님(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제를 맡아주신 조영선(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단장)·신하나·이영기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에 임해주시는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님,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삼청교육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해안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이유로 강제 구금시설인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6만여 명을 체포하고 그중 4만여 명을 강제로 편입시킨 인권침해사건입니다.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삼청교육대피해자법)이 제정되어, ‘삼청보상위’가 설립되고 2015. 6. 30. 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피해자 신청 총 4,644명 중 3,650명에 대하여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삼청교육피해자의 범위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피해 인정기준이 협소하여 헌법에 명시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인권 공백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을 개정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특별 권고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구제 없이 재발 방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수용하고, 더 이상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삼청교육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 영 교**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의 주최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미있는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서영교 의원님과 양경숙 의원님,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피해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또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분들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물리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보상은 까다로운 보상규정 때문에 4만명에 이르는 피해자 중 4,600여명만 겨우 보상을 신청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현행법에서는 삼청교육피해자를 사망·행방불명·상이 등을 입은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진실규명 결정의 취지에 따라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하도록 할 것과 다른 인권침해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보상에 준하여 보상 정도를 상향할 것,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심청구의 근거 규정을 도입할 것 등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피해자분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오늘 모이신 의원님들과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국회의원 **설 훈**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분들의 비통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시는 서영교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을 비롯해 삼청교육대 전  
국 피해자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관계자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말기인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삼청 계  
획 5호'에 따라 반인륜적 불법 기구인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치안 보호라는  
명분아래 삼청교육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실태는 참담했습니다.

삼청 계획 5호 및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6만여 명의 대상자  
를 검거했고 4만 명을 수용·교육했고, 그 교육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시킨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행한 폭력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퇴소 후에도 삼청교육 이수자에 대해 거주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후 관리 카드를 작  
성하고 수시로 관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편의를 위해 삼청 전과를 만들어 범죄수  
사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평생 '삼청교육대 출신'이라  
는 꼬리표를 달게 해 번듯한 직장 하나 가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04년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부 보상이 있었지만,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에 대한 보상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의 폭력 앞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억울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억울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뜻깊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발제를 맡아주신 신하나, 조영선, 이영기 변호사님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8일

국회의원 **신정훈**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을'과 함께하며 전주(을)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서영교 의원님,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2월 5일까지 사회악 일소로 국가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6만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 약 4만 명이 불법구금,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을 당했습니다.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보상이 있었지만,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도 더딤니다. 올해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삼청교육대 피해자 158건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1차 41명과 2차 111명을 포함하면 310건입니다. 진실규명 신청자가 759명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400여 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셈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 포고 제13호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위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국가폭력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을’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으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 늦더위와 폭우가 늦장을 부립니다. 늘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자를 맡아주신 최새얀 변호사님, 발제를 맡아주신 신하나 변호사님, 조영선 변호사님, 이영기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8일

국회의원 양 경 속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오늘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회 개최에 함께해주신 서영교, 양경숙 의원님, 이만적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 회장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최세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님,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청교육대 변호사님,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청교육대 변호단 단장님, 이영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청교육대 변호단 부단장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님,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님,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증언을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홍찬선, 김동철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와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들과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연행하였고, 실제로 약 3만 9,742명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불법 구금과 구타, 강제노역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1988년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인한 사망자만 421명에 달하고, 정신장애 등 상해자도 2천 6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삼청교육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05년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하여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진화위에 접수된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무고하게 끌려갔다가 평생 ‘삼청교육 수료자’로 낙인찍혀 취업·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 다수가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제2기 진화위는 삼청교육대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공식사과하고 법 개정을 통해 포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권고와 함께 삼청교육대 피해자 310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에게 치유·명예회복·보상의 필요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국가 차원의 선제적 보상·지원제도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4년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망, 상이, 행방불명 등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보상은 있었지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진실규명과 더불어 피해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삼청교육대 사건뿐 아니라 또 하나의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진화위의 특별권고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일상은 고통 속에 멈춰져 있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 늦어져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성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입법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저 역시 국가폭력의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28일

국회의원 **윤 미 향**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피해자증언

홍창성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

김동철 (보호감호 피해자)





## 나는 총살을 경험했다

홍창성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피해자)

1980년 8월, 잡혀갈 때 제 나이는 17살 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진학은 못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였습니다.

80년 그해 8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퇴근길에 경찰과 군인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됩니다. 그날 팔에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경찰서 안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아수라장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아닌 가축 등급 매기듯 등급을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B등급을 받고 삼청교육 버스에 탑승했는데 이때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탑승하자마자 머리를 시트 밑으로 박으라하고 거부자는 위에서 구둑발로 짓밟았습니다. 순간 뭔가 크게 잘못 났다는 걸 느끼지만 반항할 엄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첩첩산중 어느 부대에 도착했는데 하차 순간부터 그전에 일어난 일들은 장난수준 이었던겁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동물 다루듯 패고 짓밟고 몽둥이 찜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4주간의 순화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4주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4주후면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였습니다.

그 4주간 있었던 일들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잠 안재우고 굴리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4주후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6개월 동안 근로봉사라는 걸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는 여기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그래도 근로봉사대는 여기보다는 더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안 했습니다. 그러나 군트럭을 타고 작업장 부대로 옮기고 난 직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고된 작업과 구타 열차레 배고픔,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도 식판을 입에 물고 오리걸음으로 가야했습니다. 6개월을 버틴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근로봉사를 하던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중 나는 죽을거 같으니 좀 쉬고 싶다 하고 같이 작업장을 이탈해 벙커 밑에 숨어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가 없어진걸 알고 군인들이 수색을 시작했고 총을 들고 쏜다고 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서슬 푸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무작정 뛰기 시작했고 얼마 못가 잡히게 됐습니다. 작업장예세 부대로 끌려온 후 연병장 한구석에 두 평짜리 철조망을 쳐놓고 감금했습니다. 그때 부대장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들이 월복을 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말 하라며 사흘 밤낮을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머리를 손으로 만지면 물경물경 한 물주머니처럼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군법재판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계엄상태이기 때문에 즉결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인식당에 임시 재판소를 설치한 후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재판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살짝 올라간 검은 수건 밑으로 밖을 바라보니 식당에는 부대 전체 교육생과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대장(중령)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의 변론도 없이 무조건 사형을 선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계엄상황에 도주를 하려 했고 월복을 한 죄로 사형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 나는 통곡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절규했습니다.

내 평생에 그때만큼 공포스럽고 큰 소리로 울어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들은 초주검이 된 우리 둘을 끌고가더니 사형을 집행 한다며 짹차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짹차를 타고 가면서도 죽음이 두려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짐승 같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끌려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교육생들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짹차는 조금 가더니 부대 근처에 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명의 노르쇠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수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은 밤하늘을 길게 길게 찢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부대 교육생 막사쪽으로 오랫동안 흩어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탈출을 방지 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장이 꾸민 가짜 재판 이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10대 소년에게 어떻게 이런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대 안에 갇혀 있던 교육생들은 또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이후 차량은 다시출발하고 눈가리막을 풀어주더니 군영창으로 갈거라고 하더군요. 죽이지는 않는구나 하는 이 안도감을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 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 영창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또 사형을 받을까 싶어서 재판 기다리는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고 또 다른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재판에서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민간 교도소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살았다 생각하고 내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잡혀 갔을까. 가난한 10대 어린 노동자였던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몹쓸 곳에 끌려갔을까?

제 팔에 있는 상처 하나가 그곳에 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큰 죄였을까?

또, 잠시 숨어서 휴식을 취한 것이 사형을 선고 받을 정도로 큰 중형이었을까? 아무리 계엄중이라도 사형재판을 쏘로 꾸미는 부대가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는 사람들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때의 상황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되살아나 자주 악몽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마지막으로 순화교육 중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있습니다

취침 후 화장실을 가려면 많은 구호를 복창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내무반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생 한분이 구호복창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내무반 실내화 고무신 두개에 소변을 가득 채우고 취침했던겁니다.

그 사실이 발각이 되었고 전체 소대원이 기상하고 범인색출에 나섰는데 소변을 본 교육생이 본인이 그랬다고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조교는 명령했습니다. 고무신에 담겨 있던 소변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독약을 마시듯 고무신에 담긴 소변을 다 마셨습니다. 소변물을 다 마신 그는 죽지 않을 만큼 긴 시간 동안 구타, 런치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자주 생각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까지도 내 생애에서 그 충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형 받을 때의 그 공포감은 아직도 두려움으로 되살아납니다.

내게 사형을 때린 그 중령의 얼굴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잡혀갈 당시에 나는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다. 당시 구로구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던 곳이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출입 하던 곳이다 나는 그것에 착안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취향에 맞는 옷들을 많이 갖다 놓았다. 나는 유행하는 옷을 보는 눈이 있어 그런 옷들을 많이 전시해놓고 매우 싸게 팔았다. 그 덕분인지 가게는 매일 성황이었다. 장사도 잘되고 돈도 쓸쓸하게 잘 벌어 별로 부러운 게 없었다.

특히 나는 젊을 때부터 장사눈이 밝아 하는 일마다 항상 성공이라 몹시 자신만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다. 8월초로 기억하는데 몹시도 더운 날 이었다. 가리봉동 파출소 근처로 걸어가는데 웬 임검군인들이 나를 붙들었다. 그들은 이유도 없이 신분증을 요구 하고 나의 신상을 캐물었다. 나는 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잡느냐하며 항거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가리봉파출소로 연행했다. 파출소에 들어가자 경찰은 별로 없었고 군인들로만 득실거렸다. 계엄령 시기인 만큼 군인들이 경찰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주소와 주민번호를 요구해 왔다 나는 지은 죄도 없으니 순순히 내 신분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나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끌려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유치장에서 몇 밤 자고나니 내가 끌려온 이유를 알았다 내가 데모를 하는 운동권 싸움꾼 이라는 것이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고졸이고 데모를 한 적이 없다 다만 대학 다니는 친구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친구가 데모할 때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생으로 오인한 경찰이 경찰서로 잡아간 적이 있다 그것이 전부다. 그들은 분류심사에서 나를 b급으로 분류한 뒤 부대로 끌고 갔다. 옷가게를 열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무작정 끌려간 곳은 1사단 이었다. 그곳에 끌려가던 첫날은 강제로 머리를 빡빡 깎아야 했다.

어디서 끌려왔는지 부대 안에는 내 또래나 아니면 3,40대의 큰 형뻘 되는 청년들로 득실거렸다. 머리를 빡빡 깎고 삼청이라는 큼지막한 글자가 등쪽에 새겨진 군복으로 갈아 입었다. 군복으로 갈아 입힌 군인들은 우리를 내무반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3선에 정열)을 반복하며 느리거나 오열을 못맞추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는 사정을 두지 않았다. 머리에 맞아 얼굴에 피가 낭자해도 사정봐 주지 않았다.

나는 살기위해 그들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했다. 억울하다는 말은 어느새 내 목구멍 아래로 사라지고 없었다. 매일매일 맞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충실히 기어야했고 죽으려면 죽는 척 했다. 오전에 호각을 불면 수백 명의 병력이 연병장에 모여 pt체조를 했다. 반복구호를 따라 하면 10회 100회로 늘어났다 단10초의 쉬는 시간도 주지 않았다 원산폭격인 풀아박아를 하면 그게 쉬는 시간이었다.

또한 목봉체조를 시키면 목봉위에 조교가 올라탔다. 목봉을 7,8명이 오열을 갖추어 들었다. 내렸을 때 조금이라도 틀리면 군홧발과 곤봉이 춤을 추었다. 하루는 가슴에 문신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다 문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들에게 담배 몇 가지로 유인한 후 그들 위통을 벗기고 앞줄에 세운 후 카메라가 촬영을 했다. KBS와 MBC였다.

우리는 숨을 흐드득 몰아 쉬었다. 오늘밤 뉴스에 저 장면이 나간다고 했다. 알고 보니 국민선전용이었다. 가슴문신자 몇 사람 앞에 세워 놓고 전 교육생이 문신으로 가득 찬 강패인 것처럼 위장하고 군부정권이 새사람 교육시키는 것처럼 조작했다.

그런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옹변대회를 주최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연출된 원고를 읽으며 고래고래 새사람이 되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때마다 방송기자들과 신문기자들 카메라 줌은 우리를 빨아댔다. 소위 정의로운 시대를 연다는 정책이 삼청교육대정화작업 이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건 아니다 국가는 건달들 몇 사람 잡아다놓고 죄 없는 시민들까지 강패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국가폭력 이다)를 수없이 되뇌이며 분노해야 했다. 그렇게 군홧발에 짓밟히고 굶주림으로 한 달을 보내고 있을 때 소대장 중사가 내무반에 나타났다. 이제 곧 퇴소식이다.

출소해야 하니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 나는 반성문을 쓸 것이 없었다. 길가다가 잡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성문 쓸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조교들이 왕창 달라들더니 어디론가 끌고갔다 강제 노역하는 근로봉사대행 버스였다. 그 차를 타고 하염없이 끌려갔는데 1사단 1대대라는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삽과 곡괭이를 배급했다. 그리고 낮밤으로 울울한 산골짜기를 끌고 다니며 강제노역을 시켰다. 군 작전도로를 뚫고 사격장 만들기와 도로평탄작업에 동원되었다 어떤 때는 무기고 방벽쌓기 노역도 하고 짱돌을 산으로 갖다나르기도 하였다.

겨울이 왔다. 신이 베신이라 눈이 녹아 발속으로 들어왔다.

매일 차가운 물속에 발이 담겨있어 대부분 동상이 걸렸다. 속옷과 내의와 춘추복인 작업복이 전부라 추위에 노출되어 감기몸살은 달고 살았다 밤만 되면 빨가벗기고 뺨스만 입히고 영하20도의 연병장을 뺨뺨 기도록 만들었다. 소위 뺨뺨라다. 그 뺨뺨라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 두시경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벌거숭이로 겨울연병장에서 낮은 포복을 하면 연병장이 벌겋게 피로 물들곤 했다.

탈출자가 생겼다 전교육생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총살 시킨다며 단상위에 꿇어 앉혔다 무자비한 군홧발공세가 주어졌다 곤봉이 등짝을 내려쳤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칩차로 어디론가 끌려갔다.

우리 내무반 성원 한명이 배가 고파 군견사료를 훔쳐먹었다고 목에 개목걸이를 걸고 개걸음으로 질질 끌고 다녔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케리입니다. 나는 케리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그는 울면서 나는 케리입니다를 수없이 외치며 연병장을 수십 바퀴나 개걸음으로 끌려다녔다. 우리는 속절없이 그를 바라보며 함께 속울음을 삼켜야 했다 여름이 왔다. 중요 고문 중에 모기회식 고문이 있다 모기회식이 실시되면 숲속으로 전교육생이 끌려간다. 그곳에서 팬티만 입고 손발을 큰다자로 벌리고 서면 모기들이 달라든다. 모기가 달라들 때 만약 손발이 움직이면 무지막지한 폭력이 시

작된다.

모기회식은 한 시간 가량 모기에게 뜯기고 나오는 고문이다. 숲에서 나오면 온몸이 빨갱게 부어오른다. 이렇듯 폭력과 고문으로 점철된 6개월이 소위 근로봉사대다. 그곳에서 반성을 강요한다.

이곳에서는 현행범이 단 한명도 없다. 눈 물고 트다 싸우다 잡혀온 사람, 심지어는 장가 밀친 달라고 떼쓴 철부지, 바가지 택시비로 싸움 붙어 끌려온 사람, 김대중 지지했다고 끌려온 사람, 카바레에서 춤추다 온 사람, 포장마차 자리 싸움 하다 들어온 사람, 길거리에 침뱉었다고 들어온 사람, 노조운동하다 온 사람, 입바른 방송pd 짜르지 않았다고 끌려온 방송국 간부 등 그 끌려온 사람들의 종류가 다양하다못해 인간 박물관이었다. 심지어는 인기 코미디언 배삼룡과 이기동도 끌려왔다고 했다.

이렇게 나는 성실히 일하다가 느닷없이 깡패로 누명 씌워져 잡혀온 케이스였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사라졌고 연병장에 걸려 있는 태극기에 경례도 하기 싫었다. 그것이 삼청근로봉사대였다.

1981년 겨울이 올 무렵 우리는 갇힌 채로 이상한 징역형을 받았다 소위 가두어 놓고 만든법 사회보호법 부칙이다. 군부대에 검사 한명이 오더니 통지서라는 종이를 돌렸다.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보호감호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기가 막혔다. 어떻게 현행범도 아니고 잘못도 없는데 종이쪽지 한 장으로 징역3년을 살라는 말인가? 우리는 검사한테 따졌다 왜 우리가 3년의 형을 살아야 하는지 물었다. 검사가 답했다.(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 이후 우리는 또 청송감호소에 갇혔다 나는 그곳에서 구매품을 나르는 노동을 했다 군부대에서1년, 청송감호소에서 꼬박 2년 총 3년을 군부대강제노역장과 빠빠온 감옥에서 갇혀 살았다.

고문과 폭력, 굶주림과 허기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나왔다. 그곳에서 생존항쟁을 하다 총 맞아 죽은 이웃부대의 소식도 수없이 들었다 탈출하다 징역15년을 선고받은 동료도 있었다. 불침번 거부하다 물고문 받다 죽은 사람도 있었다.

맞아 죽고 찢려 죽고 굶주려 죽은 삼청교육대가 깡패잡아다가 사람정화시켰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전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50프로에 육박하고 벌금전과만 20프로 이상이라니 70프로 이상이 못 배운 무고한 민중들이 끌려간 것이 삼청교육대의 실상이다 40년이 지났다.

우리가 이 땅의 국민인가? 아니면 개돼지 노예인가?  
어떻게 40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하지 않는가?  
밝혀 달라! 우리의80년 양민인권학살 진상을!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발제문

신하나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단장)

이영기 (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 1. 삼청교육대 사건

### 가. 개요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 7. 29. 위헌·위법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sup>1)</sup>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짓밟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공포정치를 통해 정권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이자, 가장 치욕스러운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방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합니다)가 삼청교육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고(갑 제1호증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갑 제2호증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 대법원은 ‘삼청교육의 직접적인 근거인 「계엄포고 제13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1) ‘삼청교육’은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근로봉사 그리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부대에서 실시된 보호감호를 뜻하며, ‘삼청교육대’는 삼청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설치한 교육 부대(部隊)를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삼청교육대 사건’을 지칭할 때는 ‘삼청교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 라고 판시(대법원 2018.12.28.선고 2017도107결정)한바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등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단죄되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1980. 8~12. 경 경찰에게 연행되어 서울서부경찰서 등 전국 각 경찰서를 거쳐 13공수부대 등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소위 '순화교육' 을 받고 '근로봉사' 로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구타와 극심한 인권유린에 시달렸고,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한 뒤에는 재판도 없이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결정에 따라 각 출소할 때까지 청송 또는 김천 보호감호소에 강제구금되었다.

#### 나. 삼청교육대 집중 단속

계엄사령부는 1980. 7. 31. 삼청교육을 실시할 예하부대에 「불량배 소탕 및 순화계획」을 하달하고, 계엄포고 13호가 발령도 되기 전인 1980. 8. 1. 부터 군·경 합동으로 일제히 '불량배' 소탕에 착수하여 야외 유원지를 비롯한 부두, 유흥가, 기타 불량배 우범지역에 대해 날짜는 정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981. 1. 25.까지 최초 계획입안 시 국보위에서 예상했던 2만 명의 피검인원을 세 배나 초과한 총 60,755명<sup>2)</sup>을 법관의 영장 발부도 없이 검거하였다. 『한국 경찰사』<sup>3)</sup>의 자료 중 총 피검거자 60,755명을 죄명별로 분류한 표를 살펴보면, 폭력이 49,066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을 뚜렷한 범증없이 재범우려자,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의 범행내용과 죄명을 폭력으로 기록, 분류한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1차 분류심사에서 훈방되기도 하였다.<sup>4)</sup>

2) 이는 계엄포고 13호에 의하여 군·경에 의해서 검거된 인원뿐만 아니라, 계엄포고 13호 발령 이전에 검거, 유치되어 있던 경미한 법률위반 사범 중 일부와 법무부로부터 인계받은 출소예정자, 지역 및 직장 정화위원회 등으로부터 신고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3) 「진상규명 제4호 사건기록철」 1권, 입수자료, 134쪽. ; 군사연구소에 소장된 경찰청 간 『한국경찰사 - 1979. 10~1993. 2.』중 삼청교육 관련 부분을 등사한 것

4)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중 사건참고자료철」 49권, 삼청계획 5호 조치 총괄, 27쪽. 그러나 같은 책 55쪽에는 1988. 7. 1자로 내무부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삼청계획 5호 관련자료 통보'에 첨부된 <표 유형별 검거 및 처리현황(1981. 1. 24.)>에는 일반 폭력 검거자수는 49,226명이며 이들 중 훈방된 자는 14,138명으로 집계하였다. 또한 『경찰사』에서는 폭력 검거자수를 54,001명으로 집계하고 훈방된 인원을 14,824명으로 분류하였다.(4. 분류심사 현황. 참조). 폭력 검거자 중 훈방자는 전체 훈방자(D급 분류자) 17,156명의 86%에 이른다.

<범죄별 검거 현황>

	계	강도	절도	폭력	공갈	사기	도박	밀수 마약	기타
인원(명)	60,755	444	4,071	49,066	981	978	1,869	152	3,194

<지역별 · 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명)

	계	강도	절도	폭력	공갈	사기	도박	밀수 마약	기타
계	60,755	444	4,071	49,066	981	978	1,869	152	3,194
	%	0.7	6.7	80.8	1.6	1.6	3.1	0.2	5.3
서울	25,534	119	1,231	22,265	157	18	366	39	1,333
부산	7,702	43	,507	6,271	156	171	331	24	,199
경기	6,311	79	,535	4,840	79	98	220	58	,402
강원	3,049	37	,288	2,320	134	71	204	10	5
충북	1,407	8	, 75	1,152	5	34	35		, 98
충남	2,479	46	,221	1,846	37	56	105		,168
전북	1,795	12	,186	1,247	58	38	69	2	,183
전남	3,135	25	,253	2,449	57	146	107	5	, 89
경북	5,695	56	,651	3,904	121	251	285	13	,414
경남	3,234	12	,108	2,422	176	93	128	1	,294
제주	,418	7	,030	,350	1	2	19		, 9

<전과별 현황>

	전과없음	초범	재범	3범	4범	5범 이상
인원(명)	21,869	13,525	9,820	6,327	4,237	4,977
%	35.9	22.3	16.2	10.4	7	8.2

〈신체 특징별 현황〉

	문신	자상	불구	기타	정상
인원(명)	9,401	6,749	423	5,897	38,645
%	14.9	11.1	0.7	9.7	63.6

전체의 80%에 이르는 폭력범들 중 상당수는 폭력과 무관한 자들이다. 전체 피검거자 중 전과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이 21,869명으로 전체의 35.9%에 이르는데, 이는 현행범이나 누범자 중 범죄 우려자를 집중 검거한다는 취지와 크게 벗어난다. 또한 초범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인원은 전체 피검거자의 58.2%에 달하며, 신체에 문신이나 자상 등이 없어 외관상으로도 사회통념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피검거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 63.6%에 이르는 점은 계엄사령부의 자체 평가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검거’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5)</sup>

저는 1979년 7월경 폭행행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그로 인해 1980년 10월 목포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쳤습니다.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저는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공사판 등을 전전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1980년 12월경에 출소 이전에 동거 하던 여자친구의 옷가지를 나르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옷가지를 가지러 간 여자친구를 밖에서 기다리던 중 경찰이 갑자기 찾아왔고, 연행을 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왔는데, 저에게 어떠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파출소로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전과자들은 잡혀가게 되면 당시 ‘삼청교육’이라는 것을 받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들로부터 도망가려 했으나, 경찰관 두명이 저를 손쉽게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들은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이 놈 나쁜 놈이네”라면서 저를 강제로 녹번파출소 연행하였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00의 진술

저는 1980. 7. 2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의 신양극장 앞에 공사중인 건물 앞,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시던 중, 포장마차에 순경과 방범대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손님들 모두에게 옷을 배 위로 걷고, 팔 위로 걷고, 바지를 다리 위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흉터와 문신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왼쪽 팔에 15cm 정도 되는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를 보고 그대로 응암오거리에 있는 파출소로 끌고 갔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00의 진술

5)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제2권 제4호 522쪽.

저는 1980년 7월 31일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소재한 집 앞에서 통행금지 10분 전에 어머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니다. 갑자기 집 아래쪽 골목에서 공수부대원 2명이 뛰어올라왔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갑자기 제 팔을 뒤로 꺾고,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장총(M16)의 개머리판으로 제 어깨쪽지를 쳐서 저를 제압했습니다. 저를 지프차에 태웠는데, 저 혼자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노량진 경찰서 형사과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150명~200명 사이의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남성들이 밀집해있었습니다. 저는 통행금지 정도일테니, 금방 훈방하고 집으로 보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분류심사를 한다며 한 명씩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분류심사를 받았는데, 잠깐 앉으라고 한다음에 3~4분 사이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왜 집에 늦게 들어갔냐, 전에 뭐했냐.’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해라. 집에 못간다.’고 경찰이 말하였습니다. 집에 전화도 못하게 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00의 진술

저는 1980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퇴근을 하던 중 갑자기 경찰과 군인에게 잡혔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은 거리에 있던 젊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자식들 다 폭력배들이야. 잡아들여! 빨리 빨리 해야 숫자 채우지.’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00의 진술

국보위는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을 검거 대상으로 분류했다. 검거된 사람들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군·경·검 합심체에 의한 등급분류 심사를 통해 A, B, C, D급으로 분류되어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지, D급은 훈방조치**를 받았다. 전체 60,755명 피검거자 가운데 3,252명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17,761명은 훈방 또는 환자로 분류되었으며, 39,742명이 순화교육 대상으로 삼청교육을 받았다.

### 다. 삼청교육 - 순화교육

B, C급으로 분류된 사람은 1981. 1. 21.까지 전후방 26개 사단으로 보내져 4주간<sup>6)</sup> 유격체조, 기초 장애물 극복, 땅에 착지하는 ‘공수 접지훈련’ 등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구타와 극심한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것이 이른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의 실상이다.

국보위의 순화교육 지침은 다음과 같다.<sup>7)</sup>

“계엄사령관 책임 하에 군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육체적 훈련과 정신교육을 병행 실시하되, 육체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자성과 사회질서 유지를 습성화 하도록 하며, 정신교육은 개과천선의 불량배의 경험담, 불량배 스스로의 반성, 비판에 중점을 두고 종교계, 학계의 지도급 인사의 정신 훈화를 포함시키고, 교육기간은 4주를 원칙으로 하되, 순화교육만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불량배(C급)에 대해서는 죄질 및 개과천선의 가능성, 교육열의를 참작하여 2주간 범위 내에서 단축, 조기 퇴소시키고, 퇴소 시 쫓기대회 및 친권자 내지 후견인의 보증 후에 퇴소 조치한다.”

계엄사령부는 불량배들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하에 위 국보위의 지침에 따라, 계엄사령부 작전교육참모부 책임하에 순화교육 시행 방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4주간의 교육기간 중 정신교육 24시간, 육체훈련은 160시간으로 편성하고, 육체훈련은 유격체조, 구보, 기초장애물, 포복, 공수접지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라. 삼청교육 - 근로봉사

계엄사령부는 1980. 8. 22. 관계자회의<sup>8)</sup>에서 「근로봉사계획」을 마련하고 8. 27. 각 부대에 하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순화교육을 마쳤으나 순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자나 재범 우려자를 미순화자로 분류하여 수용하고 3개월간(1981년부터는 6개월)전술도로공사와 방어시설 보강 공사에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6) 교육기간은 원칙적으로 4주였는데, ‘죄질이나 개선 가능성’ 등에 따라 2주 훈련 후 조기퇴소를 시키기도 했다.

7)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중 사건참고자료철」 172권, 불량배 소탕계획 초안, 6쪽.

8) 각 순화교육 수용부대의 사단 참모장 등의 관계 실무자 회의

실제 10,016명을 미순화자로 분류하여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하고 1980. 9. 8. 부터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1980. 12. 18.) 제5조(이하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라 합니다)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결정한 1981. 1. 16.까지 전술도로 보수, 진지공사(무자재 진지 구축 및 진지 보수),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 각종 전투시설 보강작업에 투입하였다.

「근로봉사계획」은 규칙이나 근로봉사 지시 위반자를 특수교육대에 입소시켜 특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특수교육대 운용은 근로봉사대 내 사하관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육체적 고통이 되는 심한 훈련(유격, 구보, 포복)을 본인이 반성할 때까지 1~2일간 반복하여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 마. 삼청교육대 이후 - 보호감호소 수용

전두환 신군부(국보위와 계엄사령부)는 미순화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군사재판 회부, 근로봉사 연장, 격리수용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로서 국보위가 도입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격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감호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군부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검사의 감호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그런데,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소위 ‘미순화자’자를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보호)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호위원회는 군부대에 수용되어 근로봉사 중에 있던 미순화자 8,187명과 계엄포고 제13호로 검거되어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2,101명 총 10,288명을 분류기준<sup>9)</sup>에 따라 심사하여 7,578명에 대해

보호감호처분을 하였는데, 이 중 환자 등 사고자를 제외한 7,478명은 보호감호소가 신축될 때<sup>10)</sup>까지 군부대에 수용되어 ‘근로봉사’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청송, 김천, 춘천 보호감호소가 각 1981.11.25., 12.2 각 신축 개청됨에 따라 보호감호자들은 이곳으로 이송되어 나머지 보호감호기간을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인권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상론하도록 하겠다.

## 2.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관련

### 가. 삼청교육대에서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각 경찰서에 구금된 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과 수사가 아니라 B, C급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13공수부대 등으로 끌려가 4주간 교육을 받았다.

#### 1) 육체훈련

계엄사령부의 계획에 따르면 순화교육은 06:00 기상부터 22:00 취침까지 1일 16시간동안 시행되며, 오전, 오후 각 육체훈련(각개전투, 구보, 유격훈련 등)과 석식 후 자아 반성과 수양록 작성 등 정신교육이 자체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저명인사나 종교인 등 외부 강사에 의한 강연도 주당 4시간씩 16시간이 할당되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봉체조와 제식훈련, 유격훈련 등의 혹

9)	등급	분류기준	인원(명)	감호기간
	특급	실형전과 3회 이상, 형기합계 5년 이상 재범위험성 특히 농후	171	5년
	가급	실형전과 2회 이상, 형기합계 3년 이상, 재범 위험성 농후	865	3년
	나급	실형 전과자로서 재범 위험성 농후	2,488	2년
	다급	상기 특, 가, 나 급 외의 우범자	4,054	1년
	라급	충분히 교화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2,710	퇴소
	계		10,288	

10) 청송 제1감호소 1981.12. 2. 신축 개청, 김천 제2감호소와 춘천 제3감호소 1981. 11. 25. 신축 개청,



독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

아침에 기상을 하고 나면 연병장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교육이라고 불리우는 지옥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로 봉체조라고 하여, 무거운 통나무를 10명 정도가 머리 위로 들었다가 내리거나, 들었다 내리는 것,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많이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떨어뜨리더라도 하면, 단체 기합을 받거나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PT 체조를 하면 기본 2~3시간을 하게 됩니다. 먹은 것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PT 체조를 매일 하다보면, 기진맥진이 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리걸음, 선착순 달리기 등 폭력을 동반한 가혹행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염OO

이후 교육 시간이었는데, 이는 그저 맞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피티체조, 목봉체조(여러명이 목봉을 들고 어깨위로 올렸다 내리는 체조), 좌로굴러/우로굴러, 각개전투(철조망 및 포복 등), 오리걸음, 선착순을 시켰습니다. 정말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다리 아래로 손 깍지를 끼우게 한다음, 해당 팔 안에 목봉을 들게 하고, 그 자세로 오리걸음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해야했는데, 한 명이라도 중심을 잃으면 모두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굽히는 것은 물론이고, 목봉의 무게 때문에 골절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고문이었습니다. 사람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고문에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쓰러졌고, 쓰러지면 그냥 다가 가서 물을 끼얹는 식이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OO

저는 자갈밭에서 낮은 포복을 하다가 늦게 가니까 사람들 등을 밟고 올라타서 이동하던 군인이 저의 머리를 밟았는데 아래에 자갈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아래 이빨 4개가 빠지고, 입술 아래 턱 피부가 찢어지고 뚫렸습니다. 뚫린 정도가 혀가 빠져나올만큼 크게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저는 식사도 하지 못했고, 염증으로 인한 고열로 인해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지 못했고, 훈련에서 빠져서 내무반 앞에서 군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노래 소리가 작으면 와서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워커발로 차고, 넘어지면 짓밟으며 얼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찼습니다. 다친 상태였는데도 알짬 없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조OO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은 낮은 포복, 굴리기, 철조망통과, 깍지 끼고 엎드려뺨쳐를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벌을 주는 것이었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학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생 하나가 견디지 못하여 자신의 다리를 돌로 끊어 자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다리를 잡고 그대로 끌고 나가, 그 사람은 머리를 바닥에 굽히고 다쳐서 머리 부분에서 피가 줄줄 흘렀고, 그 뒤로는 사람들은 자해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아래로 몸을 그대로 굴리는 훈련도 있었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훈련이었습니다. 당

시 훈련 중 몸이 아프거나 쳐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군화발로 차거나 ‘정신봉’ 이라고 하는 교육 곤봉으로 심각하게 구타를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의 생활은 짐승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크게 다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철조망을 낮은 포복으로 통과하다가, 돌에 걸려서 어깨를 크게 다쳤고, 지금도 까맣게 상처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문OO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옥과 같은 가혹행위였습니다. 개나 돼지에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통나무 들기, 한강철교 만들기(앞 사람이 엎드려 뺨쳐를 하고 뒤에 사람에게 다리를 올림. 뒷 사람들은 어깨에 앞사람 다리를 걸치고, 뒷 사람에게 다리를 걸침. 교관들이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기합을 주거나 때림), 선착순 달리기, 오리걸음, PT체조 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호를 잘못 외치거나 실수를 하면 모두가 더 큰 기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덩치가 작은 저는 한강철교 같은 기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넘어지자, 군인이 달려와 저를 위커발로 차고 밟았습니다. 얼굴 부분을 밟아서, 입술과 턱 사이 부분이 찢어져 피가 흥건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흉터가 흉하게 남아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OO

오전 2시간 동안 피티체조를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끝나지 않는 피티체조가 매일 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휴식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오히려 군인들에게 더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쓰러지자 군인들이 달려와서 짓밟기 시작했는데, ‘이 새끼 피병한다.’ 며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때 아랫이빨 중간 부분이 다 부르졌습니다. 이빨이 깨져있는 상태에서 턱을 차니, 턱쪽 피부를 이빨이 찢려, 그 쪽 부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팔을 다친 사람들은 다리를 멀쩡하다며 다리에 돌을 올려 버티게 하였고, 다리를 다친 사람들은 팔이 멀쩡하다며 돌을 들고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군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피티 체조를 마치면 각개전투를 해야했습니다. 훈련을 잘 못따라오는 사람들은 1시간 동안 나머지 훈련을 해야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OO

오전 훈련은 오래달리기, 모래자루 나르기, 선착순 뛰기 등 고된 기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산으로 올라가서 유격훈련을 받았습니다. 유격훈련은 산 아래에서부터 산 꼭대기 훈련장까지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날씨에 실신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지만, 뒤에서는 정신봉으로 때려가며 양떼 몰 듯이 저희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올라가며 싸라고 하여 바지에 소변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쓰러진 사람을 때려서 올라가라고 악다구니를 치기도 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조교들이 PT 체조, 봉체조, 장애물넘기 등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 내려오는 길은 토끼뽕으로 내려오게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OO

## 2) 점호 및 정신교육

저녁에는 정신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아반성과 수양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들은 저녁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회에 나가면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점호시간에는 청소 상태를 확인하며 군거나 구호등을 외우게 하였고, 틀리면 구타를 하고 기합을 주었다. 점호시간 구타와 기합의 강도도 육체훈련 못지 않았는데, 입소한 훈련생이 점호를 받다가 구타를 당해 장파열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번호를 다 부르며 점호를 시작합니다. 매일 머리를 박는 등의 기합을 주었고, ‘너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느냐, 니가 사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개과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인간들이다.’ 라는 입장 연설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황OO

저는 삼청교육대 생활 초반에, 내무반에서 기합을 받던 중 철모에 머리를 박았고, 군인이 제 머리를 구둣발로 짓이겼습니다. 당시 머리가 터져서 피나갔고, 곧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치료를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염증이 생겨 끓었고, 육싹육싹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맞아서 갈비 3대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너무 아프고 숨을 못쉬는 고통이었는데, 갈비가 부러진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병원에 가니, 갈비가 부러졌었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저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우리 내무반에 있는 사람 한 명이 내무반에서 맞던 중,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음날 군인이 “어제 맞은 개는 가버렸다(죽었다). 너희 여기에서 죽어도 개죽음이야. 누구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똑바로 해.” 라고 말했습니다. 탈영을 시도하다가 총살 당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OO

교육이 끝난 밤에는 매일 반성문을 쓰게 하였습니다. 주로 ‘내가 이렇게 불량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반성중이고, 나가면 국가를 위해 살겠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불량하지 않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된 이유는, 군인들이 “너희의 교육 상태나 반성 상태를 보아 심사를 할 것이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여기에 남아있어야 한다.” 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필사적으로 반성문을 썼습니다. 내무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쪽 돌아가서 반성문을 낭독합니다.

반성문 시간의 마무리도 구타와 기합이었습니다. ‘반성이 부족하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다.’ 고 하며 30분~1시간 정도는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산포복(머리 막고 엎드려 뺨쳐)를 시켜놓고 위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며 밟는다거나, 올챙이 포복(엎드려서 팔로 발목을 잡은 상태로 가슴과 몸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키고는 했습니다.

반성문 시간이 끝나면 고향쪽을 바라보면서 명상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가족이 너희를 기다린다, 개과천선을 해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어머니 생각을 하라고 군인들이 말하면, 젊은 저희들은 눈물을 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또 때립니다. 정신 못차리고 운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OO

### 3) 열악한 식사·수면 및 환경

계엄사령부 계획에 따르면, 입소 직후 3-5일간 공복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 등을 키우기 위해 삼청교육대 입소 대상자들에게 급식을 4일간 하루 2끼니 분을 3끼니로 나누어 조정 급식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sup>11)</sup> 또한 잠을 자던 중에도 불시에 훈련을 하여 피해자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또한 씻을 수 있는 곳, 화장실 모두 열악하였고, 심지어 부상시 치료할 수 있는 의무실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삼청교육대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밥을 반공기보다 적은 양을 매끼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쌀도 아깝다. 사회악이다. 이것도 감사히 여겨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마저도 밥을 먹는 도중에 ‘동작 그만!’ 이라고 하며 뺨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삼청교육대 생활을 하며 대변을 위해 화장실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청교육대는 수용자들은 밤에 재우질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비상!” 라고 하여, 전부 발가벗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겨울의 강원도에 알몸으로 세워두고, 찬물을 몸에 끼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 좀 드냐 이 새끼들아?” 라고 비웃었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해 몸이 꼬이면, 바로 구둣발로 차고 밟으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OO

식사는 매우 열악했고,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죽지만 않을 정도로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당번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밥이 모자라면 저희는 굶어야 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다가 ‘동작 그만’ 이라고 하면 식사를 멈춰야했는데, 그 상태로 식사를 종료하게 하여 밥을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OO

11)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사건참고자료철」 61권, 삼청계획 참고1, 30쪽.

#### 4)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상이 및 실종

1989년 이후 3차례의 피해보상 관련 입법이 무산된 후, 2004. 1. 29.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4. 9. 16.-2005. 7. 30.간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644명이 신청하였으며, 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 중 사망자 44명, 후유증에 의한 사망 884명, 상이자 3,697명, 기타 행방불명 19명으로 집계되었다<sup>12)</sup>.

신고 현황(2004. 9. 16.-2005. 7. 30.) 및 처리

	계	교육 중 사망자	후유사망자	상이자	기타(행불)
인원(명)	4,644	44	884	3,697	19

저는 구타당하다가 혼절하여 실려간 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꽤 보았습니다. 자다보면 사이렌이 울리며 총소리가 나는데, 아는 탈출을 시도하던 사람이 총살을 당하는 소리였습니다. 군인들은 이들을 총살하고 나서 이들의 시신을 모두가 보게 하였습니다. 너희도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자살한 사람도 여럿 보았고, 제가 시신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OO

#### 나. 강제 노동

순화교육을 마쳤으나 순화가 미흡하거나 재범 우려자 10,016명을 미순화자로 분류하여 국민 및 국가에 대한 봉사를 통해 과거의 죄과에 대해 반성과 참회의 개과천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 아래,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하여 1980. 9. 8.부터 1981. 1. 16.까지 전술도로공사와 방어시설 보강 공사에 투입하였다.

4주간의 훈련이 끝난 뒤 일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근로봉사 대상자들은 군형트럭에 태워져 소위 ‘자대배치’라는 명목으로 전방 부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3~6개월간 도로 정비 작업과 병커 만들기, 사격장 등 제초 작업, 군사시

12)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제2권 제4호 629쪽.

설 정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모든 일을 해야만 했다. 작업을 나가면 오리걸음으로 고지를 올라가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한 뒤 오후 늦게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에는 취침 전까지 줄 맞춰 앉아 국민교육헌장이나 ‘군인의 길’ 등을 외우도록 했다. 한 명이 라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단체로 기합과 구타를 당했다. 눈만 뜨면 훈련을 하거나 일을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24시간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언제 구타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견디기 힘들었고, 교육대장과 중대장에게 죄가 있다면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교육을 마친 뒤에 저희는 사격장 청소, 병커를 파는 작업, 도로에 돌 등을 빼내는 도로정비작업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공사를 위한 도구는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삽이나 쇠스랑을 간혹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순화교육을 워낙 심하게 받았다보니 작업이 고되긴 했으나 못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에 점호를 하고, 오전 9시부터 일을 나가는데 일은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현역 군인들이 앞뒤로 지키면서 군가를 부르도록 하고, 종종 열차려,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리걸음을 시킬 때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반나절 산행을 해야되는 고지를 오리걸음으로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좀 멀리 있는 고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지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텐트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는데, 길게는 작업을 나간 곳에서 1개월여간 노숙한적도 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OO

#### 다.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처분과 수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두환 신군부는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기 위해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들은 위 규정에 따라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보호감호를 결정 받고 출소할때까지 구금되었다.

다만 보호감호자들은 보호감호 결정을 받았지만 당시 보호감호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1981.11.25., 춘천, 김천 보호감호소가, 1981.12.2. 청송 보호감호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6~8개월 정도 군부대에 있으면서 온갖 근로봉사를 하였고, 보호감호소가 만들어지자 단기자들은 김천보호감호소로, 장기자는 청송보호감호소로 이송되었다.

보호감호자들의 감호자 신분카드에 따르면 1981.11.25. 또는 1981. 12. 2. 입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각 보호 감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보호감호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송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보호법은 그 목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습범에게 검사의 감호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10년 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5, 14, 20조 참조).

그런데, 감호자 신분카드에 따르면 이들은 전과 6범, 7범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거나 폭력 등에 따른 기소유예, 벌금 등이 대부분이다. 즉,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선고형만 보더라도 위법내지 죄질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구 사회보호법 제5조에 따른 판사의 보호감호 결정이 아닌 한갓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사회보호위원회에 의해 마치 이들이 매우 위험하고 특수한 교육 개선이 필요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보호감호 결정을 한 것이다.

끌려가서 한 1년쯤 되었을 때, 아마 그 때 근로봉사대에 있었을 적 같은데, 어느 날 중대장이 서류를 하얀 종이에 덮어놓고 거기에 제 이름을 쓰고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싸인을 한다고 한다고 저항하고 단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구에 있던 영창도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교육대장이 저를 불렀고, 보호감호 3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청송감호소를 간다는 것도 군인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작업을 안보내고 오늘 이송된다고 해서 청송감호소에 간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순화교육에 잡혀가기 이전부터 보호감호란 것을 간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내무반에 있던 모두가 보호감호를 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감호 기간은 각자 달랐던 것으로 압니다.

군용버스를 타고 청송감호소로 넘어갔는데, 바로 다인실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미 겪어봤지만 생활은 일반 교도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사람은 교도관들이 때렸습니다. 교도관들이 시켜서 정비공사를 하였고, 공장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OO

### 라. 특수교육대 운영<sup>13)</sup>

수련생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및 지시 불이행자 등’에 대해 삼청교육대에 별도의 특수교육대를 설치·운영하기도 하였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육체적 고통이 심한 훈련(유격, 구보, 포복 등)을 위주로 실시하고, 반성할 때까지 반복훈련을 실시한다. (1일 기준) 계엄사령부 치안처의 검거 및 분류심사 지침<sup>14)</sup>을 보면 ‘무단 이탈자, 난동 및 소요자, 주요 범법자는 구속 송치’, ‘순화 거부 또는 모의 선동자, 기타 정당한 지시 위반 및 질서 문란자는 등급재분류 처리 내지 특별 교육 후 지정 교육 계속’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수교육대 운영과 관련하여 당시 33사단(현 17사단)의 특수교육대 운영<sup>15)</sup> 사례를 보면, 일과는 ‘06:00 기상하여 18:00까지는 일반 수련생과 동일하게 순화교육을 진행하되, 18:00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22:00부터 24:00까지 2시간을 취침시킨 후, 1시간 30분 간격으로 기상시켜 피티 체조 등의 특수 훈련’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으로도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특수교육대의 훈련과 관련하여 33사단 순화교육생 중 김정호는 조교의 지시에 불응하여 특수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자대복귀 후 사망하였으며, 삼청교육 피해자 김○○은 위원회 조사관 면담에서 ‘순화교육 입교시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까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게 하고 박달나무로 심하게 때렸으며, 13공수에서 순화교육 중 항거한 교육생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sup>16)</sup>

13)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제2권 제4호 제534쪽

14)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중 사건참고자료철」 30권, 검거 및 분류심사 지침, 85-86쪽.

15)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중 사건참고자료철」 63권, 특수교육대 운영방침, 231쪽.

16)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중 진상규명 제4호 사건기록철」, 출장조사보고(김○○, 2005. 11. 29.), 792쪽.



## 마. 학생 및 여성 삼청교육대 입소자

### 1) 학생입소자

1980. 9. 19. 2단계 불량배 순화교육 입소 계획에 따라 학생 불량자<sup>17)</sup> 625명을 1980. 9. 20.까지 11공수에 입소시키고 같은 해 10. 18까지 순화교육을 시켰다.<sup>18)</sup>

삼청교육 피해자 진○○의 진술<sup>19)</sup>

“자신이 서울미술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중에 집에서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봉천5동 파출소로 끌려가서 30사단에서 1980. 8. 30.까지 순화교육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공수부대원들에게 2시간 동안 맞은 후 이들이 부르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30사단으로 가서는 형식적인 심사를 받았고, 1980. 8. 30. 순화교육 퇴소 후 학교에서 자퇴 처분을 받았으나 일주일 후 복학을 하라는 통보가 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며, 동네 친구들 6명도 순화교육을 받았는데 진○○과 김○○만 고교를 졸업하고 나머지는 순화교육의 후유증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였다.”

### 2) 여성 삼청교육대

처음에는 남성들만 순화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검거자 중 여성이 포함되자 추가 계획으로 8. 11.부터 3주 예정으로 여성 삼청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초 예상인원은 최대 150여명이었으나 예상 외로 많은 인원이 입교하여 1차 입소자로 3주간 273명, 2차 입소자는 2주간 46명 등 총 319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구 월남 파병 훈련소)에서 실시하였다.

17) 당시 계엄사령부의 기록에는 학생 및 여자 삼청교육대 입소자에 대한 명칭이 ‘학생 불량자’, ‘학생 불량배’로, 여자 입소자는 ‘여자 불량배’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1989. 국회 청문회 당시에는 ‘학생 삼청교육대’, ‘학생 입소자’, ‘여자 삼청교육대’ 등으로 명칭이 순화되어 표기되었다.

18) 1980. 9. 19. 계엄사령부는 학생 불량자 550여명을 전원 11공수에 입소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나, 『계엄사』나 다른 자료에서는 학생 입소자 인원을 625명으로 기재하고 있다. 『사건참고자료철』 61권, 제2단계 삼청교육 협조(계엄사령부, 1980. 9. 19.), 92쪽.

19)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진상규명 제4호 사건기록철」 9권, 조사보고(진○○ 진술내용, 2006. 6. 20.)

삼청교육 피해자 김○○의 진술<sup>20)</sup>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다가 군인들에게 밥해 주러 간다는 경찰서장의 말만 믿고 버스를 탔는데, 삼척을 경유하여 춘천경찰서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군부대로 가서 교육을 받았고, 입소 후 2일 만에 훈련 중 줄을 잘못 선다고 조교가 들고 있던 몽둥이로 옆구리를 푹 찌르자 넘어졌는데 우측 늑골이 골절되어 사단 의무대에 입원, 약 1주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가장 힘든 훈련은 연병장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과 쪼그려 뛰기로, 연병장 바닥에 돌이 많아 대다수 입소자들이 정수리가 터져 봉대를 감고 있었다.”

삼청교육 피해자 권○○의 진술<sup>21)</sup>

“경찰서 유치장에 구류 중 삼척으로 새마을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말만 믿고 따라 나섰는데 춘천 오음리에서 순화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원산폭격 기합을 받던 중, 몇 초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자 조교가 몽둥이로 때려 정수리를 맞았는데, 다음날부터 왼쪽 눈 주위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퇴소 후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좌측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 4. 삼청교육대 출소 이후의 피해

##### 1) 사후관리로 인한 피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출소하고 나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를 이수하고 퇴소할 경우, 해당부대에서는 이수자 인원현황 및 퇴소일자를 퇴소 3일 전에 최기(인근)경찰서에 통보<sup>22)</sup>하고, 최기(인근)경찰서에서는 치안본부를 경유하여 해당연고지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수용 군부대에서 신병을 인도토록 인수일자와 인원을 통보하였다.<sup>23)</sup> 관할경찰서에서는 퇴소일자에 군부대를 방문하여 퇴소

20)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진상규명 제4호 사건기록철」 9권, 출장조사보고(김○○ 면담보고, 2006. 5. 29.)

21)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진상규명 제4호 사건기록철」 9권, 출장조사보고(권○○ 면담보고, 2006. 5. 29.) ; 권○○과 김○○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서 1980년 당시 각각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주점을 운영하였으나, 관할 경찰관과의 마찰로 인하여 같은 골목에서 마주보고 주점을 운영하던 5~6명(여성)이 함께 강원도 장성경찰서에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교관 및 조교는 전원 여자였으며, 남자는 취사병만 있었고, 군복과 속옷, 수건 등과 일용품 일체 군부대에서 지급받았으며 생리대도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2) 계엄사령부의 근로봉사계획(1980. 8. 27.)에 포함된 내용으로 퇴소자를 근로봉사 시행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기록과 함께 인계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23) 「사건참고자료철」 55권, 205쪽.

자 명단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상호 교부하고, 근로봉사자 심사분류표 및 생활기록부를 인계받아 신병을 인수하였다. 관할경찰서에 도착시 필요한 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경찰서장(또는 수사과장)이 계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리·동 단위 정화추진위원회에 인계하였다. 순화교육을 받으면 전과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삼청교육을 마치고 퇴소한 이수자들에 대하여 거주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 관찰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삼청전과를 만들어 범죄수사에 활용하였다<sup>24)</sup>.

## 2) 사회적 낙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평생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진술로는 직장에서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해고되는 경우가 상당하였고, 취업할 때 범죄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삼청교육대 출신인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집안이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제가 삼청교육대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 조금만 삐딱하게 행동하면 바로 잡혀간다고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면 삼청교육대 출신인 것이 바로 드러나서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고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폄박을 견딜 수 없었고, 인생의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OO

24)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 결과보고서」, 제2권 제4호 제573쪽

###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전쟁과 같은 인공적인 재해나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재해, 혹은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일련의 부적응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삼청교육 피해자 중 상당수는 직접적인 외상이 없다 할지라도, 불법 체포·구금과 강제 집단 수용 및 노역,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쟁피해자나 고문피해자, 포로수용소나 감옥에서의 인권피해자와 유사한 외상을 경험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회적 낙인과 연관되어 심화·장기화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삼청교육대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한 경련이 옵니다. 몸이 떨리는 것 뿐 아니라, 손도 심하게 떨리고, 안면도 떨립니다. 펜도 잡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OO

삼청교육대를 다녀오고나서 저의 정신질환이 발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3년 후부터, 악몽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고, 알콜의존증이 걸리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술 먹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형과 어머니가 말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보니 결혼이나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신적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여 20~30년간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었고, 중증 장애인이 되어 30년 넘게 연금과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님들이 이민을 간 상황에서 가족이 없이, 친구가 없이 살아온 외로운 세월입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OO

이후로 저는 허리에 이상이 생겼고, 몸을 쓰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계를 영위하여야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결혼을 하여 아들 2명이 있어서 일용직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허리가 좋지 않으니 제대로 된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시장에서 리어카 장사, 과일 장사 등을 전전하였지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기도 전에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군복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삼청교육대로 인해 제 인생이 너무나 달라졌고, 망가졌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OO

저는 지금도 삼청교육대에서의 생활이 꿈에 나옵니다. 정신과도 주기적으로 다녔습니다. 밝고 건강했던 저는 사라지고, 평생 이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어깨와 팔이 탈골되었고, 인대를 다쳐 지금도 어깨와 팔 부분이 불편합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OO

## 5. 나가며

## 1. 들어가며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라 한다) 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sup>1)</sup> 및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sup>2)</sup>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 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중 사망자 54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다만, 삼청교육대의 법률적 근거는 순화교육, 근로봉사는 포고령 제 13 호에, 보호감호 처분은 1981.1.24. 비상계엄 해제를 염두에 두고 민간인들을 계속 격리 구금하기 위해 1980.12.5. 제정된 사회보호법, 특히 부칙 제 5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이뤄졌습니다.

법률적 근간이 되는 포고령 제 13 호 및 사회보호법 부칙 제 5 조 제 1 항의 위헌성, 위법성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코자 합니다.

1) ‘삼청계획’ 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개혁작업을 청하는 것으로, 삼청계획 1호 (권력형 부정축재자 척결), 2호 (정치 비리자 척결), 3호 (고급공무원 숙정), 4호 (3급 이하 공직자 숙정) 에 이어 사회악 일소조치로 단행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 계획을 삼청계획 5호라 칭했으며 이것이 일명 ‘삼청교육’ 으로 불렸다. 일반적으로 ‘삼청교육’ 은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근로봉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부대에서 실시된 보호감호를 뜻하며, ‘삼청교육대’ 는 삼청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설치한 교육 부대 (部隊) 를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삼청교육’ 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503쪽).

2) 국방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를 “군부대에 설치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삼청교육 기간 또한 계엄포고 제 13호 발령일이자 순화교육 시작일인 1980. 8. 4.부터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삼청교육 중 보호감호 처분자가 군부대에서 법무부 산하 보호감호시설로 이송됨으로써 군부대 삼청교육이 종료되는 1981. 12. 5.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칙 해당자의 보호감호 처분이 1981.12. 5. 종료된 것은 아니다.

## 2. 삼청교육대 사건의 배경<sup>3)</sup> 및 입안 과정

### 가. 삼청교육대의 탄생 경과

전두환 신군부의 포고령을 통한 내란 및 사회보호법 제정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979.10.27 04시, 제주도 제외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제10호 발령

#### 1980년

5.17 계엄 전국으로 확대

5.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8.4 삼청교육대를 위한 포고령 제13호 발령

8.26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 조직폭력배 엄단 지시

9.1 전두환, 통일주체국민회의(8.27) 통해 11대 대통령 취임

10.27 제5공화국 헌법 개정 공포

헌법 부칙에 의해 국회해산, 국가보위입법회의에 헌법상 국회권한 대행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정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함.

11.25 법무부, 사회보호법안 국가보위입법회의 법제사범위에 제출

11.26. 국가보위입법회의 법제사범위원회, 사회보호법 본회의 회부

#### 12.5. 입법회의 본회의, 사회보호법 제정 의결 (법률 제3286호)

12.18 사회보호법 시행

####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

3.3 전두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2.25) 통해 12대 대통령 취임

11.25 김천 제2감호소, 춘천 제3감호소 신축 개청

12.2 청송 보호감호소 신축 개청.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 내용을 일부 발췌 정리함.

## 나. 삼청교육대 사건의 배경

신군부 세력은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을 명분으로 1980. 5. 31. 전국비상계엄하에서 국보위를 설치하였습니다. 국보위는 그 설치령 (대통령령 제 9897호, 1980. 5. 31.) 에서 상임위원회를 두고 (제4조) 4)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게 함으로써 (제6조) 5) 총1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이 중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사회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삼청계획’의 입안, 시행에 따른 업무 조정 및 통제를 주관하였습니다.

**1980. 7. 29. 국보위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불량배 소탕계획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및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하여,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검거 및 삼청교육대 수용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즉, 계엄포고 제13호<sup>6)</sup>는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1980. 8. 4.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발령되었습니다.**

4) 제4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회 (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러한 폭동 행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는 내란행위였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5) 제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6) 계엄포고 제13호 포고문

불량배 일제검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고질적인 각종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 순화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대상자

가. 폭력사범 (강도 절도 치기배 포함)  
나. 공갈 및 사기사범 (서민 착취배 포함)  
다. 사회풍토 문란사범 (밀수 마약 상습도박 포함)

2. 검거된 불량배는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사용 순화조치한다.

3.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기간 중 지정지역을 무단 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

4. 대상자는 자수하여야 하며 자수시는 최대한 관용한다.

5. 대상자의 비행을 알거나 피해를 입은 자는 신고하기 바람에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한다.

6. 일정기간 수용, 순화된 자는 사회복귀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위 포고 중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고 엄중처단한다.

1980. 8. 4.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계엄 포고령 제13호에 근거하여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 합동으로 총 60,755명의 대상자를 검거하였고 그 가운데 39,742명을 1980. 8. 4.부터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중 사망자 54명<sup>7)</sup>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삼청교육 중 도주하였을 시 계엄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습니다.

#### 다. 삼청계획의 입안과정

삼청계획은 사회정화 및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1980. 7. 10.경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만기의 책임하에 실무간사 서완수 등이 기안하였으며, 1980. 7. 28. 위 김만기가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의 재가를 받은 후 계엄사령부에 하달함에 따라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되었습니다.

삼청계획 제5호는 과거 5.16 당시 국토건설단의 계획을 참조하여 입안된 것으로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불량배를 단속했던 좋지 못한 전례를 20년 뒤 군부 독재하에 답습한 것이었습니다<sup>8),9)</sup>

삼청계획 5호를 실행하기 위하여 발령된 계엄포고령 제13호는 입안과정에서 불량배 강제수용 및 순화교육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합법화하고자 국보위 내에서

7) 5공 특위 당시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른 삼청교육 중 사망자는 54명(순화교육 28명, 근로봉사 11명, 보호감호 14명, 검거과정 1명)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위가 추가 사망자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았다(『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579-620쪽). 그러나 1988-1989. 국방부의 삼청교육관련 사상자 신고 공고에 따른 피해자 신고접수 당시 교육 중 사망 외에 후유 사망으로 397명이 신고하였고, 2004. 1. 29.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른 피해 보상 신청에서도 후유사망 884건이 접수되어 최종적으로 후유사망자 367명에 대하여 피해보상이 결정된 바 있다(『삼청교육 피해 보상 활동보고서』, 삼청보상위, 2014. 이는 후유사망까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삼청교육 사망자수는 교육 중 사망자 54명과 후유사망 인정자 367명까지 최소 421명이라 할 수 있다

8) 불량배 소탕에 관한 신군부의 논의는 국보위 이전 계엄위원회부터 진행된 바 있다. 계엄위원회는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된 위원회로, 위원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여 1979. 10. 28.-1980. 6. 5. 31회에 걸쳐 총 39건의 의제를 토의 자문하였다. 1980. 3. 28. 계엄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당시 내무부차관 서정화는 “강력법들은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도록 강제노동이나 강제수용 등의 특별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계엄부사령관 황영시는 중범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며 해당 회의에서 이미 포고령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 이용훈이 포고령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등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강제수용을 골자로 하는 불량배 소탕 방안이 계엄위원회 자체에서 구체화 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제21차 계엄위원회 회의록, 『戒嚴史, -10 - 26事態와 國難究服-』, 戒嚴史編纂委員會, 1982, 221심22쪽; 「정기 계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입수자료(DA0792633), 141시51쪽). 이러한 계엄위원회의 논의와 국보위의 삼청계획 5호간 관련성에 대하여, 5공특위 당시 김만기는 그 직접적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계엄사령부 자체적으로 이미 불량배 검거 및 해당 이슈를 다루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고, 허삼수(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간사위원)는 국보위가 발족과 동시에 계엄관계가 되어 있으므로 국보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 연관성을 일부 시인한 바 있다(1989. 2. 9. 5공특위 제3소위 제10차 회의록).

9)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517쪽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는데, 5공 특위에서 이충길 (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은 삼청계획 5호 시행에 대하여 당시 합법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고 이를 위하여 국보위 법제사법위원회가 포고령 발령을 검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만기 또한 불량배 체포·송치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나 교육·순화는 그럴 수 없어 당시 법률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 포고령으로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하게 되었다며 국보위내에서 위법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sup>10)</sup>

표 ) 삼청교육대 흐름도

업무 흐름	대상자	주관기관
기획/입안	약 20,000명 예상	국보위 주관
대상자 검거 1980.8.1-12.29	60,755명 재판회부 3,252명 훈방환자 17,761명	내무부 주관 (군경합동)
순화교육 1980.8.4.-1981.1.21.(11차)	39,742명	계엄사 주관 26개사단 <sup>11)</sup>
근로봉사 1980.9.8.-1981.1.23. (9차)	10,016명	계엄사 주관 20개사단 <sup>12)</sup>
보호감호 1981.1.25	7,578명	법무부 주관 군부대수용관리
	2,416명	청송 보호감호소 이감
사후관리	퇴소자	내부부 주관 경찰.일선행정기관

10)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502쪽.

11) 1.2.3.5.6.9.11.20.25.26.28.30.31.32.33.35.36.37.38.39.5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2관구사령부,11공수여단,13공수여단

12) 1.2.3.5.6.7.8.9.11.12.15.21.25.26.27.28사단.수도기계화사단, 2기갑여단, 동해안경비사령부, 1공병여단

## 라. 검거 및 분류심사

삼청교육 실시기간 동안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른 불량배 일제검거는 총 5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삼청교육 실시를 위하여 1980. 8. 초 두 차례 대대적 검거가 진행된 후 포고령에 따른 삼청교육 종료 이전인 1980. 11. 말부터 12. 말까지 다시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졌습니다.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 발령 이전인 1980. 8. 1.부터 일제 검거가 시행되어 사실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반인을 검거하고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시키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계엄사령부는 1980. 7. 29. 국보위로부터 「불량배 소탕계획」을 하달받은 후, 1980. 7. 30. 「불량배 소탕, 순화 준비지침 (지시)」이라는 전문을 각 계엄사무소장에게 보내어 사전준비를 강구하였고, 1980. 8. 1. 군·경 합동으로 일제히 불량배 소탕에 착수하였습니다. 검거대상은 현행범, 재범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이었으며 야외 유원지를 비롯한 부두, 유흥가, 기타 불량배 우범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일제검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0. 8. 1.부터 1981. 1.25. 계엄해제 전까지 총 5회에 걸친 일제 검거를 통하여 군·경 80여만 명이 투입, 총 60,755명이 법관의 영장 발부 없이 검거되었습니다.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서별로 분류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A, B, C, D 4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차 분류심사위원회는 시·군·구 단위에서 군·경·검 합동위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2차 정밀심사위원회는 순화교육 장소로 지정된 군부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B, C급 등 순화교육 대상자는 입소한 군부대에서 재분류 심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전체 피검자 가운데 35.9%가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전과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가 정식 발령되기 이전인 1980. 8. 1.부터 일제검거가 실시되어, 일말의 법적근거 없이 체포된 것입니다.

표) 계엄 포고 제13호 검거자 등급분류

등급	인원(명)	내용	비고
A	3,252	군사재판 464 검찰 2,788	실제 순화교육 대상자는 BC급 40,347명 중 환자 605명을제외한39,742명 <sup>13)</sup>
B	17,872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	22,475	2-4주간 순화교육후 사회복귀	
D	17,156	훈방	

### 3. 계엄포고 제 13 호의 위법 · 위헌성에 관한 주장

#### 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합판결에 따른 주장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의 발동이 내란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해당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5.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 (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보위 및 그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언론 통제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보위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13) 1988. 10. 국정감사 당시 내무부와 국방부 모두 B, C급 검거자수는 40,347명이라고 답하였으나 환자를 제외한 실제 삼청교육 입소자수는 내무부 통계 39,786명, 국방부 통계 39,742명으로 44명의 차이가 있었고, 이에 당시 국방부는 내무부 통계 근거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국방부 과거사위 진상규명 제4호 사건기록철』 (이하 ‘과거사위 사건기록철’ 이라 한다), 55권, 141쪽). 입소자수 44명 차이에 대하여 삼청교육대인권연합은 검거된 일선 경찰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했거나 심하게 다쳐 돌려보낸 인명수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삼청교육대백서 (상)』,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2001) 사실 확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국방부 과거사위는 국방부 기록을 준용하여 39,742명으로 기재하였다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1997.4.17.선고 96도3376판결)은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sup>14)</sup>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sup>15)</sup>하였습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

14) 1979. 10.27 04:00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선포된 비상계엄

15) 아울러, 대법원(1997.4.17.선고 96도3376판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3호 발령은 국보위가 시달한 ‘불량배 소탕계획’ (삼청계획 5호)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므로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하여 계엄포고 제13호가 계엄법 시행령 제7조와 제10조 제1항<sup>16)</sup>에 따라 포고령 발령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부의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부의도 되지 않고 시행되어 적법한 절차도 법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포고령이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 나.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도107 결정에 따른 주장

삼청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로서 계엄포고 제13호는 국방부 과거사위 등 여러 기관에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된 후 근로봉사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여 계엄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육군군법회의에서 1980.12.23. 징역 10월이 확정된 바 있는 삼청교육 피해자가 재심 청구하면서 계엄포고 제13호는 위헌·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해당 재심청구가 법률상 방식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제2심 법원이 계엄포고 제13호가 계엄법 제1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

16) 계엄법 시행령 제7조 :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즈음하여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각 부처의 소관사무중 중요한 사무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주관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계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계엄사령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상신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국계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령되었고, 시행 당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며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는 결정<sup>17)</sup>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이 계엄포고령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끝에, 대법원은 국가긴급권은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면서 계엄포고 제13호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결정을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도107 결정).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계엄포고의 내용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의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

17) 부산지방법원 2017. 1. 2. 자 2016로65 결정

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제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제3항)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는 처음으로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삼청교육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위법한 것이었으며 삼청교육 피해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

## 다. 소결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위 및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그 절차와 내용의 위법성을 계속하여 지적해 왔습니다. 아울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삼청교육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형식상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2. 28. 자 2018모107결정).

#### 4. 삼청교육대 - 순화교육 (1980. 8. ~ 1981. 1.)의 위헌·위법성

##### 가. 개요

‘삼청교육대’는 국보위가 1980. 7. 29. 입안한 「삼청계획 5호」에 기하여, 헌법(1972. 12.27.개정헌법 제 8 호, 1980.10.28. 헌법 제 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 헌법’ 이라 합니다) 제 54 조 제 3 항 및 계엄법(1981.4.17.법률 제 34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 이라 합니다) 제 13 조를 근거로 1980.8.4. 발령된 「계엄포고 제 13 호」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 나. 순화교육 대상<sup>18)</sup>

계엄포고 제 13 호에 의해 1980. 8. 1. 부터 1981. 1. 25. 까지 총 60,755 명이 영장 없이 검거되었고, 이들은 경찰 분류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A, B, C, D 4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검거된 이들 중 B 급, C 급으로 분류된 40,347 명(B 급 17,872 명, C 급 22,475 명) 중 환자 605 명을 제외한 39,472 명을 대상으로, 1980. 8. 4. 부터 1981. 1. 21. 까지 전후방 26 개 부대에서 11 차에 걸쳐 순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류기준에 대하여, B 급은 ‘특정 범죄<sup>19)</sup>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 C 급은 ‘폭력사실 경미하고 합의된 사건, 동종 전과 없는 자, 우발적 범죄자, B 급 해당자 중 정상이 참작된 자’ 였지만 실제로는 검거 및 분류심사과정에서 준비과정

18)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장 삼청교육 실태 - 제1절 검거 및 분류심사(pp. 517-530)

19) 조직폭력, 공갈, 치기배의 행동대원, 기타 일반 경제/정치 폭력배, 상습도박, 사기꾼, 폭력우범자,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전과자

부족으로 대상자가 엄선되지 않고 실적 위주로 무리한 검거를 했던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일례로, 삼청교육 피해자 김 00의 경우 형사 2명이 1980. 10. 말 자신의 집에 찾아와 “강도 한명을 잡았는데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형사를 따라갔다가 원주 38사단에 인계되어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삼청교육대는 내용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교육 대상에 무고한 시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다. 순화교육 실태<sup>20)</sup>

순화교육은 ‘얼룩진 과거를 땀과 씻어버리고 죄짓고는 살 수 없다는 정신을 뺏속 깊이 새겨주어 개과 천선시킴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6시 기상, 22시 취침 일정으로 1일 16시간, 총 4주간 실시되었고, 오전, 오후 각 육체훈련(각개전투, 구보, 유격훈련)을 하게 하였습니다. 입소 직후 3-5일간은 입소 대상자들에게 2끼분을 3끼로 나누어 배식함으로써 체력을 감퇴시키고, 복종심을 강제로 키우게끔 하였습니다. 식사시에는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소보다 못하면 소고기를 먹지말자’라는 반인권적 구호를 복창해야 했습니다.

입소 대상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사 주변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수련생 내무반은 불침번을 배치하였으며, 수색대대 1개 소대, 장갑차 4대, 102 연대 7소대, 수색대대 및 헌병으로 구성된 기동타격대를 배치하여 경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교육에 불성실하거나 정신적으로 헤이한 자’와 같이 순화교육에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는 교육대상자들은 삼청교육대 내 특수교육대에 입소시켜 육체적 고통이 심한 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는 6시부터 18시까지는 일반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순화교육을 받았고, 18시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22시부터

20)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장 삼청교육 실태 - 제2절 순화교육(pp. 530-545)

24 시까지 2 시간을 취침시킨 후 1시간 30분 간격으로 기상시켜 피티 체조, 쪼그려뛰기, 팔굽혀펴기 훈련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학생, 여성,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순화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의 경우 1980. 9.19. 2단계 순화교육 입소 계획에 따라 학생 불량자' 625명<sup>21)</sup>에 대하여 1980. 9. 20.~1980. 10.18. 제11공수여단에서 순화교육이 실시되었고,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른 검거자 중 여성이 포함되면서 추가계획으로 여자 삼청교육대가 실시되어 총 319명이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 (구 월남 파병 훈련소) 에서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1980년 노동계 정화 차원으로 합수부에 끌려간 노동조합 간 부 중 22명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4주간 순화교육을 받고 강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sup>22)</sup>

#### 라. 순화교육의 반인권성 및 위헌·위법성

국방부 과거사위는 순화교육은 정당한 교육훈련을 넘어 반인간적인 가혹행위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키는 야만적 행위로서 사실상 유신헌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차별’에 해당하나, 계엄포고 제13호는 계엄법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순화교육의 적법한 근거로 볼 수 없어 순화교육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차별이며, 근로봉사 역시 근로계약의 체결에 강제성, 작업 내용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자유로운 교섭이 불가능한 점, 자유로운 퇴소가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유신헌법 제10조제1항이 금지하는 강제노역이라고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위 대법원 결정을 토대로 계엄포고 제13호를 직접적 근거로 실시된 순화교육의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21) 『戒嚴史— 10.26事態와 國難究服』(1982) 등 자료에는 학생 입소자 인원이 62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88년 문교부에서 국회 5공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8. 12. 21. 현재 치안본부에 확인한바, 삼청관련 고교생 수는 98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명단은 확인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537~538쪽).

22) 국방부 과거사위가 삼청관련으로 해고된 노동조합 간부 명단 22명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보안사 삼청교육자 명단에서 일부를 확인하였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3과-236, 2022. 2. 17.)

## ① 영장주의 위반

영장주의의 본질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서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sup>23)</sup>

그런데 계엄포고 제13호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처벌하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아무런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비록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였습니다.<sup>24)</sup>

결국 삼청교육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군부대에 수용하여 구금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 없이 위헌 무효인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임의로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하여 군부대에 구금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23)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4. 1. 8. 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면서, “긴급조치 제1호 제5항은 긴급조치 위반자 및 비방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광범위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아무런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비록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 70, 132, 170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라고 판단한 바 있다.

24)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계엄포고의 내용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도107결정).

## ②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한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계엄포고 제13호는 검거 대상자를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사범’ (제1항) 으로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며, 죄의 구성요건을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 (제3항) 고 정하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사건 피해 원고들은 당시 아무런 이유없이 ‘마구잡이식’ 검거되었거나,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들어간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또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면서 검거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③ 신체의 자유 침해

유신헌법 제10조 제1항 (현행 헌법 제12조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거동의 임의성 또는 자율성, 즉 불법적인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체포’ 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 (引致) 하는 것을 말하고, ‘구금’ (현행 헌법은 ‘구속’) 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처벌’ 은 형사상의 처벌,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하며, ‘강제노역’ 은 공권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력의 제공을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는 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어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이 넘는 기

간 동안 유치장 구금 후, 군부대로 이송되어 짧게는 4주 길게는 6개월간 구금되어 신체의 거동을 제한당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습니다.

#### ④ 고문 가혹행위

또한 순화교육 기간 일어난 정당한 교육훈련 수준을 넘어선 수준의 기합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사실상 처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김 00 은 “명분은 순화교육이었지만 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합을 주었으며, 야밤에 옷 벗기고 찬물을 붓거나 각목과 쇠파이프로 수없이 폭행하고 철조망 근처만 가도 실탄사격을 해버리는 등 그야말로 야만적인 교육 그 자체였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전 00 는 “순화교육기간 중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넘어진 자신의 손가락을 공수부대 군인이 밟아 우측 중지 인대가 파열되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여성 피해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김 00 은 “군인들 밥해주러 간다는 경찰서장 말을 믿고 버스를 탔고, 춘천경찰서에서 다른 여자들과 군부대로 가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입소 2일 만에 훈련 중 줄을 잘못 선다고 조교가 들고 있던 몽둥이로 옆구리를 쿡 찌르자 넘어졌는데 우측 늑골이 골절되었다. 가장 힘든 훈련은 연병장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과 쪼그려 뛰기로, 연병장 바닥에 돌이 많아 대다수 입소자들이 정수리를 터져 붕대를 감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권 00 는 “원산폭격 기합을 받던 중 몇 초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자 조교가 몽둥이로 때려 정수리를 맞았는데, 다음날부터 왼쪽 눈 주위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결국 좌측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순화교육은 근로봉사(6개월)이나 보호감호(1년~5년)에 비해 기간은 짧지만, 그 야만성은 근로봉사나 보호감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순화교육 입소 직후 3일 내에 12명이 사망하였고, 삼청교육 전 과정에서의 사망자 54명 중 28명이 순화교육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마. 소결

계엄포고 제13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영장도 없이 검거하여 수용하고 순화교육을 강요한 것은 영장주의 및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5. 삼청교육대 - 근로봉사 (1980. 9. ~ 1981. 1.)<sup>25)</sup>의 위헌·위법성

### 가. 근로봉사 대상

근로봉사는 순화교육 후 재분류 심사에서 B급(‘순화가 미흡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자’)로 판정된 10,016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근로봉사계획』 (1980. 8. 22.) 에 의하면 근로봉사기간은 3개월, 1981년부터는 6개월이었습니다.

### 나. 근로봉사 실태

순화교육이 끝난 후 10,016명을 미순화자로 분류,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하여 1980. 9. 8.부터 1981. 1. 3.까지 9차에 걸쳐 민간인과 격리된 전방 지역에서 전자기동진지 구축, 전투진지 공사, 전술도로 신설 및 보수, 통신선 매설 등 각종 전투시설과 방어 시설 보강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로봉사 기간은 3개월로하고, 근로봉사 중 순화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근로봉사 지역으로 이동 전까지 대상자로부터 ‘취로지원서’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원서 작성에 불응하는 자는 군사재판 또는 경찰에 인계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5)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장 삼청교육 실태 - 제3절 근로봉사(pp. 547-553)

또한 근로봉사 기간중에도 순화 교육과 동일하게 ‘특수교육대’를 운용하였으며 육체적 고통이 심한 훈련(유격, 구보, 포복)을 시켰으며, 계속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포고령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하거나 교육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로봉사자 퇴소 결정을 위해 부대 참모장 (대령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검·경 합동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순화 여부에 따라 다시 ‘가’ ~ ‘라’ 급으로 분류하여 ‘라’ 급은 ‘개과 천선된 자로서 사회 복귀 가능자’로 판단하여 퇴소 조치하고 그 외에는 주기적으로 재심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4주간의 순화교육이 끝난 뒤 일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돌아가지 못한 피해자들은 6개월간 도로 정비 작업과 병커 만들기, 사격장 등 제초 작업, 군사 시설 정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뒤 오후 늦게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에는 취침 전까지 줄 맞춰 앉아 국민교육현장이나 ‘군인의 길’ 등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단체로 기합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눈만 뜨면 훈련을 하거나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언제 구타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 다. 근로봉사의 반인권성, 위헌·위법성

##### ①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신체의 자유 침해

앞서 순화교육과 마찬가지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영장도 없이 검거하여 수용하고 근로봉사를 강요한 것은 영장주의 및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② 강제노역의 실시

강제노역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과하는 노역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허용되는 경우도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유신헌법도 제 10조 제1항 (현행 헌법 제12조제1항) 에서 “모든 국민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강제노역 …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삼청교육 근로봉사 당시 형법 제67조<sup>26)</sup> 및 행형법 제35조가 법률상 강제노역을 정하고 있을 뿐,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와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sup>27)</sup> 무엇보다 당시 행형법은 징역형에 따라 노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이 참작하여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4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8조 등 국제인권규범은 강제노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강제노역 금지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장 속에 강제노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sup>28),29)</sup>

그러나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근로봉사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력 제공을 강요받는 등 강제노역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은 일절

26) 형법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한다.

27) 근로기준법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28)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1 장은 인간의 존엄을 규정하고 있고 그 속에 인간의 존엄(제1조), 생명권(제2조), 신체불 훼손권(제3조), 고문 및 비인간적 형벌과 처우의 금지(제4조)와 함께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를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9) 또한 독일기본법 제12조제3항에서도 “강제노동은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소관 전체 협약 중 제29호 및 제105호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강제노동이 갖는 반인권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강제노역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법률로 강제노역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야 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 판단기준으로 부과된 강제노역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심신미약자나 노약자 등 일정한 경우 강제노역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적·절차적으로 존재할 때만이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노역의 부과라고 할 수 있다

고려되지 않았고 진지 구성, 전술 도로 개설, 방어시설 보강 등 건강한 일반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노역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일일 할당량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가혹한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 ③ 정당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노동착취

삼청교육 피해자는 “13개월 간 노동하고 퇴소하면서 받은 금액은 당시 돈 5만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 3000원의 노임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헌, 위법한 순화교육, 나아가 고문 폭행 등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6. 삼청교육대 - 보호감호(1981. 1. ~ 1983)<sup>30)</sup>의 위헌·위법성

### 가. 사회보호법 부칙에 따른 보호감호 실시 배경

1980. 8. 26.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의 ‘조직 폭력배의 수괴 또는 누범자를 엄단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안을 작성하여 1980.11. 25. 국가보위입법회의 (이하 ‘입법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였습니다.<sup>31)</sup>

사회보호법은 1980. 11.26. 입법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해 12. 5.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12. 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sup>32)</sup>. **삼청교육 입소**

30)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장 삼청교육 실태 - 제4절 보호감호와 사회보호법(pp. 553-565)

31) 신군부는 1979. 12. 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헌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국보위를 설치하여 국가를 통치하였고 이후 기능이 마비된 국회 입법 기능 흡수를 목적으로 1980. 9. 29. 국보위를 확대, 개편하여 1980. 10. 27.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회의에 헌법과 법률상 국회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국보위가 1980. 10. 27. 입법회의로 그대로 계승되자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사실상의 통치기구였던 국보위는 입법기구인 입법회의로 재탄생하게 된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557쪽

자들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사회보호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사회보호법의 목적은 그 제정이유<sup>33)</sup>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정한 위험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 처분의 근거 법률로서 삼청교육대 운영의 발상과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보호법의 입안과정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그 적용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sup>34)</sup>, 특히 삼청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보안처분에 대해 「미순화 불량배 교육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였다가 사회보호법 부칙으로 삽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계엄해제 이후에도 일정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1980. 10. 24. 계엄사령부가 근로봉사 실시 군부대에 통보한 ‘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조치 계획’에 따르면, 수용시설이 완공되는 1981. 6.말까지 미순화자를 군부대에 계속 수용하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는 사회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감호시설을 1981. 6.말경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특정지역 수용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회보호법 제정에 삼청교육생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sup>35)</sup>

32) 『국가보위입법회의사료』, 40~41쪽.

33)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개선·교화되지 않은 상습범과 조직범 그리고 현행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고질적인 심신장애 범죄인이 수다히 있고, 이들은 언제 어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고 특히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각인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과하거나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행함으로써 훌륭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새 시대에 동참케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 할 것인바, 상습범·조직범·심신장애범죄자·마약류중독자·알코올중독자 중 특히 위험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의 보호와 교육·개선·치료를 위한 감호와 보호관찰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제도를 마련한 것임 (사회보호법 제정이유).

34) 1980. 9. 9. 국보위는 삼청교육 미순화자에 대해 생산성이 큰 광물자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입하고, 산악 오지로 도로망이 미개척되고, 경계 안전면에서 천연적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 5시 0년 이상 수용하여 개발과 교화 선도가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556쪽 참조).

35)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을 다루어 왔으나, 보호감호제도의 현실을

## 나. 보호감호 대상

국보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1980. 12.18. 사회보호법<sup>36)</sup>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981. 1. 20. 사회보호위원회 (위원장:법무부 차관) 를 발족시키는 한편, 보호감호의 법적 근거로 사회보호법(법률 제3286호, 1980. 12. 18. 제정. 이하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삼청교육생들이 최초의 피적용자가 되었습니다.

군부대에 수용되어 근로봉사 중에 있는 미순화자 8, 187명과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검거되어 경찰에 유치되어 있던 2,101명 등 총 10,288명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하고, 1981. 1. 16. 이 중 7,578명에 대하여 1~5년의 보호감호 처분이 결정 되었습니다.

보호감호 집행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산하 감호소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군시설을 감호 대용시설로 사용하여, 보호감호 처분자 7,578명 중 환자 등 사고자를 제외한 7,478명을 20개 군부대에 계속 수용하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종사케 하였습니다.

군부대 수용 중 사회보호위원회의 출소심사에 의하여 12차에 걸쳐 보호감호 처분자 5,006명이 조기 출소하였고, 1981. 12. 2. 청송 제1 보호감호소 신축 개청<sup>37)38)39)</sup>에

우려하면서도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유지하여 왔다. 보호감호제의 위헌성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 호제도 실태연구」,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03, 185시87쪽 참조.

36) 사회보호법은 위 법의 목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습범에게 검사의 감호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10년 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5, 14, 20조 참조).

37) 사회보호위원회 심사결과 보호감호 대상이 아닌 다음 해당자들은 계엄 해제와 함께 1981. 1. 21.-23. 어간에 분할 퇴소 조치되었다. (『과거사위 사건기록철』, 61권, 210쪽). ① 근로봉사자 중 ‘라’ 급 판정자 : 1,352명, ② 1981. 1. 5. 입소자 중 ‘C’ 급 : 1,358명, ③ 1980. 12. 19. 이후 검거되어 순화교육중인 자 : 2,699명

38) 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감호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교도소 및 국·공립병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감호시설로 대용할 수 있다.

39) 사회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시설로 대용하는 시설은 교

따라 2,416명이 청송 제1보호 감호소 등으로 이감되었습니다<sup>41)</sup>. 보호감호소에 수감된 삼청 관련 보호감호생 (이른바 ‘부칙 감호생’) 들은 대부분 1983년경 출소하였고, 제27사단 감호생 소요사건에 관련된 7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88. 12. 22.경 가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표) 보호감호 심사 의 내용

등급별	결정기준	인원(명)	감호기간
		10,288	
특급	실형전과 3범 이상, 형기 합계 5년 이상, 재범위험성 특히 농후	171	5년
가급	실형전과 2범 이상, 형기 합계 5년 이상, 재범위험성농후	865	3년
나급	실형전과자로서 재범 위험성 농후	2,488	2년
다급	등급 특, 가, 나 급의 우범자	4,054	1년
라급	충분히 개화되고 개선의 정이 현저한 자	2,710	퇴소

다. 보호감호의 실태

구 사회보호법 제 7 조는 보호감호의 내용에 대하여 “피보호감호자는 보호감호 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근로의 경우 피보호감호자의 동의를 있는 때에 한한다” 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청교육 미순화자에 대한 보호감호의 목적은 ‘장기간의 격리 수용’ 이지 사회복귀가 아니었으므로 실제로는 삼청교육과 마찬가지로 강제근로와 구타, 기합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보호감호 장소인 청송감호소가 1981. 12.

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유치장·군교도소·영창 및 국방부산하 시설과 보건사회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으로 한다.

40) 대통령령 제10528호 (1981. 11. 2.) 에 따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청송 제1, 제2, 제3보호감호소가 설치되기로 하였으나, 부칙 제2항에 따라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제2보호감호소는 경북 김천시 평화동의 구 김천소년교도소를, 제3보호감호소는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의 구 춘천교도소를 이용하였다

41) 군부대 수용 중 출소자 5,006명과 감호소 이감자 2,416명을 합산하면 7,422명으로 보호감호 실제 집행자 7,478명과 56명의 차이가 있다. 이는 보호감호 중 사회보호법위반죄로 실형 선고를 받거나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교도소로 이감된 경우, 보호감호 중 사망자 등에 의한 차이로 보인다.

설립되기 전까지는 군부대에서 감호가 실시되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와 환경도 유사하였는바, 보호감호의 실질은 삼청교육의 연장이었습니다.

이에 감호생들은 수차례 집단 소요 사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보호감호자들은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순화교육(4주), 근로봉사 (3개월~6개월)은 그나마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퇴소희망을 갖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텼으나, 갑작스럽게 보호감호 처분까지 내려지고 그 기간도 1년~5년 사이로 장기화<sup>42)</sup>됨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집단 소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꿔서 설명합니다.

-----

## 7.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위법성

### 가. 삼청교육대 출생의 비밀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자신의 정권 찬탈을 법적, 행정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하여 1980.5.31. 초헌법적 권한을 가진 임시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고 합니다)를 설치하였습니다.

국보위는 ‘삼청계획’<sup>43)</sup>을 입안했는데, 삼청계획 1호(권력형 부정축재자 척결), 2호(정치 비리자 척결), 3호(고급공무원 숙정), 4호(3급 이하 공직자 숙정)에 이어 사회악 일소조치로 단행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계획인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습니다.

---

42) 피보호감호자 대부분은 1983년경 출소하였으나 단체소요사건에 연루된 피보호감호자 7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1988.12~1989. 1. 가석방되었습니다.

43)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삼청계획을 입안했는데, 당시 국보위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지명을 따서 ‘삼청계획’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삼청계획 5호’는 일명 ‘삼청교육’으로 불리는데,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헌법(1972. 12. 27. 개정 헌법 제8호. 1980. 10. 28.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제54조 제3항<sup>44)</sup> 및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합니다) 제13조<sup>45)</sup>를 근거로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이하 ‘계엄포고 제13호’ 또는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합니다)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 8. 26.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의 ‘조직 폭력배의 수괴 또는 누범자를 엄단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안을 작성 1980.11. 25. 국가보위입법회의 (이하 ‘입법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보호법은 1980. 11. 26. 입법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해 12. 5.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12. 18.자로 시행되었습니다<sup>46)</sup>. 삼청교육 입소자들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사회보호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사회보호법의 입안과정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그 적용대상으로 염두에 두었는데<sup>47)</sup>, 삼청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보안처분에 대해 「미순화 불량배 교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다가 사회보호법 부칙으로 삽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44) 유신헌법 제54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5) 제13조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6) 『국가보위입법회의사료』, 40~41쪽.  
 47) 1980. 9. 9. 국보위는 삼청교육 미순화자에 대해 생산성이 큰 광물자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입하고, 산악 오지로 도로망이 미개척되고, 경계 안전면에서 천연적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 5시 0년 이상 수용하여 개발과 교화 선도가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556쪽 참조).

계엄해제 이후에도 일정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1980. 10. 24. 계엄사령부가 근로봉사 실시 군부대에 통보한 ‘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조치 계획’에 따르면, 수용시설이 완공되는 1981. 6.말까지 미순화자를 군부대에 계속 수용하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는 사회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감호시설을 1981. 6.말경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특정지역 수용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회보호법 제정에 삼청교육생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봉사 대상자 10,016명 중, 7,578명에 대해 1-5년 상당의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고, 이들 중 2,416명이 2023.12 개정된 청송 제1보호감호소, 김천 제2 보호감호소에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 나. 국회가 아닌 초헌법 기구인 국보위에 의한 입법

전두환 등 신군부는 1979. 12. 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헌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1980.5.31. 국보위를 설치하여 국가를 통치하였고, 이후 기능이 마비된 국회 입법 기능 흡수를 목적으로 1980. 9. 29. 국보위를 확대, 개편하여 1980. 10. 27.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회의에 헌법과 법률상 국회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국보위가 1980. 10. 27.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그대로 계승되자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사실상의 통치기구였던 국보위는 입법 기구인 입법회의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sup>48)</sup>입니다.

결국, 사회보호법은 내란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등이 만든 초헌법적 임시 기구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557쪽



#### 다.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로서의 사회보호법 입법의 위헌성

대법원(1997.4.17. 선고 96도3376판결)은 계엄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보위 및 그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설치,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sup>49)</sup>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비상계엄<sup>50)</sup>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하며<sup>51)52)</sup>, 내란죄의 종료시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1.24.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은 내란행위로서 1979.10.27.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제10호, 그리고 1980.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포고령 제13호에 따라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 중인 12.5 국회가 아닌 위헌기구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해 제정, 12.18 시행된 것인 이상, 그 자체로서 위헌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아닌 내란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등이 내란 행위 중에 만든 초헌법적 임시기구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당시 1987년 헌법 및 현행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니다.

49)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0) 1979. 10.27 04:00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선포된 비상계엄

51)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2) 아울러, 대법원(1997.4.17. 선고 96도3376판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에 따른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성

이미, 지난 준비서면5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엄포고 제13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위헌 위법한 것이었으며 삼청교육 피해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

마. 소결

대법원은 일찍이 1980.10.27.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하여 12.12사태, 1981.1.24. 비상계엄 해제될때까지 일련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제10호, 제13호 발령 등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내란행위 자체에 포섭되어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보호감호의 근거가 된 사회보호법은 당시 헌법 및 현행 헌법을 유린 한 채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서 제정. 시행된 것으로,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사회보호법 또한 헌법상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제정되었으므로 위헌 무효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회보호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정한 절차에 의해 입법되지 아니한 전체로서 위헌 무효인 이상,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또한 위헌을 당연히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 8.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

### 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규정

사회보호법 부칙 <법률 제3286호, 1980. 12. 18.>

제5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sup>53)</sup>.

### 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

19세기의 형벌제도의 근본원리인 응보형사상의 이념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행위의 피해정도에 비례하여야 하고 아무리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경우라도 또 아무리 형벌이 행위자의 개선에 부적당한 제도라도 그러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는 범죄자의 반사회성에 맞지 않는 양형(量刑)과 행형제도의 결합 등으로 인하여 누범등 상습범죄자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형벌제도만으로써는 사회방위를 다할 수 없어 이러한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교육형적인 보호감호제도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사상은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범인의 개선·교육 및 그를 통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형벌제도도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 두지 않고 교육을 통한 사회방위에 두고 있음은, 양형의 조건을 규정한 형법 제51조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범행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보다 중요한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행형의 목적을 규정한 행형법 제1조에 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

53) 위 사회보호법 부칙은 1980.12.18.법이 제정될 때부터 2005.8.4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존치되었습니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백하니, 이러한 이념 아래에서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이를 구별할 아무런 필요가 없고, 본질에 있어 똑같은 교육형이므로 응보형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생겨난 보호감호제도는 더 이상 이것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은, 형벌이건 보안처분이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범죄에 대하여 2중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비록 이름이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범죄인에 대하여 고통을 가하는 것이면 이는 여기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하며, 적법절차란, 헌법상의 규정을 기다릴 것도 없이,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은 그 성립절차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념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확립되어온 여러원칙은 물론 자연적 정의에도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거듭처벌금지의 헌법규정에 반하는 보호감호는 그 점만으로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에 해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은 부칙 제5조 제1항에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도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부칙 제5조 제2항에의 정한 기간에 보호감호를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호감호의 주된 내용은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심신단련과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을 과하는 것이어서(법 제7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행정법상의 자유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라는 이름으로 종래 자유형을 복역여부에 관계없이 순화교육, 근로봉사에 이어 다시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자유형을 복역하는 것에 다름 없어 이는 결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는 이중(거듭) 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 제5조의 누범이나 상습성 있는 범죄인 등도 아님<sup>54)</sup>에도, 또는 이에 상관없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라면 순화교육, 근로봉사도 모자라서 다시 교육·개선을 위한 보호감호라는 미명아래, 이름만 다를 뿐 자유형과 같은 보호감호제도를 두어 근로봉사 후 중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협적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헌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호감호소의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는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이중처벌 등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위헌 논란 끝에 2005. 8. 4. 폐지되었습니다. 국회는 폐지 이유로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 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sup>55)</sup>

#### 다.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판결 없는 구금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는 형벌을 대체하는 방식보다 형벌에 덧붙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범죄자 개선보다는 격리·구금으로서 집행에 있어서 사실상 형벌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감호 처분 관할은 법원에 있었습니다.<sup>56)</sup> 그런데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54) 대부분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보호감호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보안처분은 형벌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방위를 위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예방적 입장에서 형벌을 보완하는 제재로써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감호 처분은 이들이 형벌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위험성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그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55) 사회보호법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

56) 사회보호법 제4조(감호사건의 관할)

① 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 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sup>57)</sup>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 등에 수용된 자들에 대해서만 법원의 재판 없이 일종의 행정위원회 격인 사회보호위원회의 처분만으로 구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을 선고받지도 않았고 따라서 재범의 가능성을 따질 기초조차 갖추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회보호위원회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보호위원회 심사도 서면으로만 이루어져 피감호 대상자로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항변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보호감호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재범의 위험성을 묻지 않고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에 정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89..7.4선고 88헌가 5결정)을 하였습니다. 법관의 자유재량을 과도하게 제한 한 채 필요적으로 일정 기간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처분’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고령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삼청교육대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재판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법원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라 할 것입니다.

57) 사회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사회보호법 제32조(사회보호위원회)

- ①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 (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및 그 취소와 감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사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보위는 삼청교육 피해자를 계속 수감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규정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사회보호위원회는 1981. 1. 16. 근로봉사 중에 있던 미순화자 및 계엄포고 제13호 위반으로 검거된 총 10,288명 중 7,578명에 대해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엄포고 제13호는 유신헌법 및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무효이고, 따라서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 무효가 되었으므로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특정시설에 수용’ 하는 것 또한 위헌 무효로서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개선을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호감호시설(청송보호감호소와 청송교도소의 보호감호대용시설)이나 집행방법의 현실을 보면 1.6명 남짓한 협소한 방에 4-5명씩 수용하고 방안의 식구통에서 밥을 받아 먹게 하는 등 기타 여러 면에서 교육·개선은커녕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보호감호의 집행실태를 볼 때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위헌적인 계속적 자유박탈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마. 소급효 금지 원칙 침해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화교육, 근로봉사의 전제가 되었던 형사처벌 내지 기소유예 등 전력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위헌적인 포고령 제13호에 따라 징역형과 똑같이 집행되는 순화교

육 및 근로봉사를 위해 특정시설에 수용하여 강제구금, 강제노역을 시켰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사후적인 1980.12.18. 또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한 것은, 이중 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급효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 바. 소결

따라서,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은 위헌인 계엄포고 제 13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위헌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금지 및 소급효 금지 원칙, 신체의 자유 및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에 반한 위헌·위법 무효라 할 것입니다.

## 9. 나가며

위헌인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는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한 처분이었습니다.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강제로 군부대에 수용하여 구금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 없이, 임의로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하여 군부대에 구금하는 등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특히, 보호감호 처분 관할은 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내려 구금 및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한 것으로, 법관에 의해 형을 선고받지도 않았고 재범의 가능성을 따질 기초조차 갖추지 않았던 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에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헌법 제10조 제2문), 이는 1980.10.27. 5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따라서 사회보호



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당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의하더라도 이중처벌 및 소급효 금지원칙,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삼청교육대, 즉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처분은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에 다름 아닐뿐만 아니라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나아가 보호감호 처분은 헌법상 입법기구인 국회가 아닌 초헌법 기구인 사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입안하였고, 법관에 의하지 아니한 사회보호위원회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 위반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소집을 당한 60,755명 중에서 훈방으로 석방된 17,761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피해자 39,742명이 직접 피해자이고, 이중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보호감호 피해자는 7,578명(청송 2,4416포함)이라 할 것인데,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피해자가 760명 (2023.7.18.까지 3차에 걸친 310명 진실규명 결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배상 등에 관한 삼청 피해자법 또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

## 1. 기존 법률의 주요 내용(2004. 1. 29. 제정 2004. 7. 30. 시행)

### 제2조(정의)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한다.

### 제4조(보상금)

① 피해자 중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2.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제5조(의료지원금)

- ① 피해자중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일부개정법률안(2023. 1. 31. 발의)의 주요 내용

- (1) 삼청교육피해자의 범위 확대(피해자 순화교육 약 40,000명, 근로봉사 약 10,000여명, 보호감호 약 7,500여명)
- (2) 생활지원금 신설
- (3) 특별재심 신설(도주 - 계엄법 및 사회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 약 120명)
- (4) 트라우마 치유사업
- (5) 성금의 모금

제2조(정의)

-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구금·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

제4조의2(배상의제)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5조의2(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특별재심) ① 피해자 중 삼청교육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제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9조의2(삼청교육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청교육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삼청교육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의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3. 추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전부개정의 필요성

- (1) 진상규명 및 직권전수조사의 필요성
- (2)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기간 연장
- (3) 진상규명 신청자의 범위 확대
- (4) 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 및 권한 명시
- (5)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 (6)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 (7) 위령사업의 수행

#### 제2조(정의)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구금·가혹행위·강제노역·성폭력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상 상속인(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삼청교육피해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조(진상규명을 위한 신청)

-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신청의 각하 결정)

-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조(진상규명 조사개시)

-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삼청교육피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0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제0조의2(동행명령)

- ① 위원회는 제0조 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삼청교육피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조의2(위원회의 피해자 직권 결정)

-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삼청교육피해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삼청교육피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0조(결정서의 송달)

- ① 위원회는 삼청교육피해자로 결정하였거나 결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0조(불이익처우 금지) 삼청교육피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차별 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0조(피해자 보상)

- ①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제0조(보상원칙)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0조(삼청교육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조(위령사업)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삼청교육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위령탑 및 위령공원 조성
  - 2. 삼청교육 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전시
  - 3. 그 밖에 위령 관련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토론문

명 속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전 성공회대 교수)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국가폭력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안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1.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삶과 철저히 기획된 국가폭력

폭력은 신체를 훼손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존엄성을 훼손한다. 폭력은 정신과 신체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은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청교육대 진화위 결정문에서 보이듯 그들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온 후에도 장애를 입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업을 얻기도 힘들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결정문을 보면 이들의 삶이 개인의 실수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송모씨는 10대말인 1980년에 잠을 자다 이유 없이 2군단 보안부대 영창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15일동안 구금되어 매일 열차려를 받았다. 어떤이는 공수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약 1개월 정도 순화교육을 받고 부대명 불상 군부대에서 근로봉사를 한 후 계엄령 해제와 함께 퇴소하였다. 근로봉사는 구타와 노역이 병행되었으며 밥을 적게 주어 산에서 뱀을 잡아먹기도 하였다. 어떤 이는 형사가 동원예비군 비상훈련을 한다며 데려가 순화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적이었고 곤봉과 워커발로 온몸을 구타당해 관절통으로 고생 하다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집에서 물어볼 게 있다고 파출소로 가서 군부대에 입소해 순화교육을 받고 그후에 형제복지원까지 끌려가 사람도 있다. 단지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였다.

진화위에서 결정 받은 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구타와 가혹행위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보니 탈출을 시도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사망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에는 제27사단에서 근로봉사 중 교육생들이 집단소요를 일으킨 사건도 있을 정도로 가혹한 순화교육이었다. 퇴소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삼청교육대는 알려졌다시피 1980년 계엄 포고 13호에 의해 재판과정이나 영장도 없이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국가폭력이었다.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삼청계획은 사회정화 및 불량배 소탕대이라는 명분으로 1980년 7월부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만기의 책임하에 실무간사 서완수 등이 기안하였으며, 전두환의 재가를 받은 후 계엄사령부에 하달하여,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되었다. 불량배 체포·송치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나 교육·순화는 어렵다고 보고 당시 법률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 합법화를 위해 포고령으로 내린 것이다. 철저히 기획하고 집행된 국가폭력이다.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인과 경찰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며 폭력을 행사한 대규모 국가폭력사건이다. 1981년 1월 24일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계엄 포고 제13호의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근로봉사 중인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1980년 12월에 시행된 사회보호법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다.

1988년 청문회 이후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 시행령을 근거로 ‘삼청보상위’가 설립되어 2015. 6. 30.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피해자 신청 총 4,644명 중 3,650명에 대하여 보상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기준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피해 인정 기준이 협소하였다.

## 2. 우리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어떻게 임해야 하나

국가폭력은 헌법에 명시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인권의 공백을 보여줬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배 보상 등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재발방지책은 하나로 연관된 것이다. 이중 하나만 하거나 안 한다면 정의롭지도 인권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에 국가폭력에 대한 해결과정에 위의 사안을 제시한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아직도 나치 가해자들을 전범재판소에서 재판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폭력, 국가범죄가 발 디딜 틈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삶을 일상으로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 피해자구제 없이 재발방지가 될 수 없다. 즉, 국가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시민들이 보고 권력자들이 보고 따를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구제와 재발방지는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다. 연결된 것이다.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은 판결문에만 쓰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들의 삶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가 국가폭력임을 우리 사회가 진화위나 재판을 통해 인정받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리적 치유 등의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우리 국가가 국가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삼청교육대처럼 독재정권에 의해 위헌적으로 기획된 국가폭력은 매우 체계화된 국가기구의 작동 체계를 이용해 매우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찰, 군대, 관료 등 국가가 동원 가능한 ‘합법적’ 하부기관의 힘은 비명도 내기 어려운 정도로 개인에게 막강한 힘으로 작동했다. 또한 합법을 위장한 국가폭력이기에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폭력이후의 삶에서도 인권 침해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에 심리적 트라우마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법의 공백, 피해자지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법개정안은 필요하다.

### 3.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 국제인권기준

정부는 국가폭력임을 확인한 후에 진화위를 구성하고 피해조사를 하고 국가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해자 인정기준이 협소해 아직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보장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이하 진실정의 특보)는 독재정권시대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이들을 만나 조사활동을 하였다. 곧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방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다. 그가 조사한 사건에는 삼청교육대사건도 있다.

보고서에서는 삼청교육대만이 아니라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화위 구성 및 피해자지원에 관해 환영하면서도 한국정부가 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유형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포괄적인 법적 틀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모든 피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피해자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체적 건리와 자격이 피해자들에게 접근가능해야 하며 피해자 증거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시간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심각한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배보상과 심리적 치유가 있을 때 피해자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에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삼청교육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일이다. 또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범위 확대(피해자 순화교육 약 40,000명, 근로봉사 약 10,000여명, 보호감호 약 7,500여명)하고 생활지원금 신설하고 특별재심 신설한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범위를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 뿐만 아니라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구금·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를 구제할 뿐 아니라 이후에도 비슷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 외에 성금의 모금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선택이다. 국가재정을 핑계로 피해자구제를 방치하는 현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자구책인 것이다. 이는 5·18보상법 등 기존 과거사 관련 법에도 있는 만큼 타 법의 근거도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입은 인권침해로부터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치유와 배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 삼청교육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회복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언

- 어떻게 하면 “선(先) 진상규명, (後) 배·보상” 요구를 관철할 것인가? -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전 성공회대 교수)

### 1. 전국의 수많은 19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어서 빨리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길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권고가 이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매우 뒤늦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1980년 삼청교육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권고를 해 온 점에 대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대목은 일정하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수많은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듯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삼청교육대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는 매우 더디고 뒤늦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이 엄청난 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그 피해 규모에 걸맞는 직권조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 왔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데 관련 국가기관들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성실하게 응해왔다. 마땅히 국가기관은 이를 바로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32조의2

**2. 삼청교육대 관련 보상법 개정 이유와 촉구**

사건 발생 43년이 경과하고 있는 2023년 8월의 시점에서 피해자 단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先) 진상규명, (後) 배·보상”을 강력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

1980년 8월 삼청교육대 운영 당시 시행된 1972년 헌법 가운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들을 열거해 보자.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2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972년 유신헌법”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종신 총통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최악의 헌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국가 의무를 소상히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일당은 이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관련 법률들을 모두 위반하고, 무시하고, 장악하면서 국민 다수의 권리를 정면 침해, 파괴, 유린하였다. 말 그대로 삼청교육대 운영은 모두 헌법 위반이며 전면 불법 무효였다.

전두환·노태우 일당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1980년 5월 31일, 초헌법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다음 이들 “사실상 군사반란세력”은 이른바 폭력배 및 부패사범 등을 일소한다는 명분아래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삼청교육대”라고 불리는 만인 공분할 반문명적이며 반헌법적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들 전두환 일당은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 755명을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하였다. 원래 경찰은 39,786명을 끌어들여 군대에 인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3만 9,742명을 군부대 내에 가두어 놓고 이른바 삼청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국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때 이미 44명의 국민 존재 자체가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말도 있다.

B급으로 분류된 10,016명은 전국 20여 개 부대에 수용되었다. 1988년 국회 5공 특위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 부대들 중 삼청교육을 실시한 부대는 제21보병사단, 제3보병사단, 제12보병사단, 제17사단, 제33사단, 특전사령부, 여군교육대(여자 삼청교육대) 등 전국 26개 부대였다. 이들 부대는 보통 국민들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인 대부분 전방 산악지역에 소재한 부대였다고 한다.

강창성 국군보안사령관도 영등포교도소에서 순화교육을 4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년도 안 되어 금방 끝난 군대에서의 삼청교육과 달리 전국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1980년 8월부터 무려 1988년까지 모든 입소자 및 재소자에 대하여 봉체조와 구보, PT교육 등 삼청교육을 실시하였다.

치안본부에서는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삼청 교육관련 기록을 전산자료화하고,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 범죄수사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주거이전 시 전

입 동·면사무소에서 동 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하였다.<sup>1)</sup>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반복이다.

1981년 1월 24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그러나 끝내 삼청교육대에서 풀려나오지 못한 7,478명은 1년에서 5년 사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강제로 구금되어야만 했다. 이들의 행적을 추적, 확인,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삼청교육에 관련된 국가범죄 가담기구는 국방부와 육군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치안본부(현 경찰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망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가해자들에 관한 진상 규명을 서둘러 조속히 실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립의 근거법령이었던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가 최종적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법적으로 무효이자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시킨 국가폭력으로 최종 평가했다. 즉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2015년 한일영씨가 제기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제 이들 피해자단체가 요구하는 진실규명을 우선해야 할 근거는 무엇일까?

### 피해자 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Victims' Rights)

국제연합 총회는 2006년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 구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결의하였다.<sup>2)</sup> 여기서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내용을 보면 1980년 삼청교육대 피해는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진실·화해 관련 법률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을 병렬하여 관행상 사망자를 희생자로, 기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분류해 왔다. <피해자 권리장전>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피해자(victim)’라고 부른다. 여기서 피해자는 직접적 피해를 당한 사람, 그의 직계가족, 피부양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2차 피해를 당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삼청교육대 [三淸教育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071&cid=46626&categoryId=46626>. 참고문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법무부사』(법무부, 1998).  
2) 이하 이재승 2019 ‘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42호 71-108쪽 참고.

## 〈피해자 권리장전 제8조〉 피해자의 정의

“이 문서의 취지상 피해자는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인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한다.”

〈피해자 권리 장전〉은 진실을 알 권리(right to know), 재판받을 권리(right to justice),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를 피해자 권리의 3개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3개 권리 축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 구제를 위하여 상호 연관된 권리들이다.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피해자 권리 장전〉은 국제인도법의 영역에 피해자 중심적 시각(victim-centric perspective)을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이 〈피해자 권리장전〉은 종래 개인주의적 배·보상을 넘어 민주사회의 구성이라는 원대한 야망까지도 포섭하고 있다.

피해자는 진실을 알 권리를 누려야 하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진실을 알 권리와 손해배상 권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진실 자체가 손해배상의 관건적 요소라고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1980년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사건의 전모에 관한 진실 규명부터 확실하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안 제2119715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설훈·안규백·송옥주·윤후덕·박주민·정성호·문정복·신정훈·김홍걸·서영교·윤미향·송갑석 의원(12인)) 2023-01-31 발의.

현행법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삼청교육피해자로 규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하도록 하고,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이 있었음.  
 이에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구금·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호 라목, 제4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구금·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배상의제)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중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별재심) ① 피해자 중 삼청교육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

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제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삼청교육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청교육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삼청교육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금의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들과 시행령 상의 필요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1980년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피해사건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 재판받을 권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을 권리 등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구체화해서 제시, 요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5·18민주화운동만 놓고 보더라도 네 차례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

적 국가기구에서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18 진상조사는 첫째, 1988년 7월 8일 ~ 89년 12월 31일까지 노태우 정권 시절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및 그 청문회, 둘째, 1994년 11월 23일 ~ 96년 2월 28일까지 김영삼 정부 시절 12·12 및 5·18 사건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감찰부 수사, 셋째,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24일까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 넷째, 2017년 9월 10일 ~ 2018년 2월 10일까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으로 이어졌으나 전두환 등 5공 신군부의 발표 책임 등 핵심 사안을 규명하지 못해 시간과 노력, 예산만 들이고 말았다.

이 사이에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12·12 및 5·18 사건에 관한 판결을 통해 5·18 사건을 내란 및 내란 목적의 살인행위라고 단정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노태우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런 여러 차례의 진상 조사에도 불구하고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나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사건 등 1979년 12·12 군사정변부터 1980년 8월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사건까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세력이 계속하여 저지른 가장 반헌법적이며 극악무도한 일련의 국가범죄사건 등을 연속선상에서 그 진실과 허위, 은폐를 가려내지 못한 역사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이행기 정의 확립의 분할이요 역량 소진, 역사부정세력의 방해와 왜곡, 국가망각 그 자체였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先) 진상규명이 어서 빨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넘어 그 엄청난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됨으로써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가족공동체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찬동한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I.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법개정의 필요성의 근거

(발제문을 중심으로)

현행 삼청피해보상법은 삼청교육대의 위헌·위법성과 가해행위의 국가폭력성, 피해의 정도, 광범위한 피해자, 계엄군에 의한 폭력행위의 비난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단순하고 편협한 입법이다. 이하에서 발제자의 글에 나타난 삼청교육대의 위법성의 근거를 정리하고 법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한다.

#### 1. 포고령, 순화교육, 근로 등의 위법성

##### (1) 사건상황

- 1980. 8. 1.부터 1981. 1.25. 계엄해제 전까지 총 5회에 걸친 일제 검거를 통하여 군·경 80여만 명이 투입, 총 60,755명이 법관의 영장 발부 없이 검거

##### (2) 위법성의 근거

- 유신헌법이나 당시 계엄법, 5공헌법 등이 국가의 실질적 헌정질서에 부합한다고는 볼수 없으나 그렇다고 과거의 것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은 정의롭지 못한 체제하에서도 구법질서와 반한 반인권적 폭력임이 명백하다.
- 1980.8. 4. 계엄포고 제13호가 정식 발령되기 이전인 1980. 8. 1.부터 일제검거가 실시되어, 일말의 법적근거 없이 체포된 것
-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의 발동이 내란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 국방부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하여 계엄포고 제13호가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그 위법성을 지적.



- 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긴급권은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면서 계엄포고 제13호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

### (3) 정리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판결 및 발제문참고)

## 2. 삼청교육대 - 순화교육 (1980. 8. ~ 1981. 1.)의 위헌·위법성

### (1) 순화교육 상황

- 삼청교육대는 내용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교육 대상에 무고한 시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
- 학생, 여성,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순화교육이 시행됨

### (2) 위법성의 근거

: 국방부 과거사위 → 순화교육은 반인간적인 가혹행위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키는 야만적 행위이자 처벌

: 판결 → 삼청교육 피해자는 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어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유치장 구금 후, 군부대로 이송되어 짧게는 4주 길게는 6개월간 구금되어 신체의 거동을 제한당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 순화교육 기간 일어난 정당한 교육훈련 수준을 넘어선 수준의 기합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사실상 처벌에 해당한다.

→ 순화교육은 근로봉사(6개월)이나 보호감호(1년~5년)에 비해 기간은 짧지만, 그 야만성은 근로봉사나 보호감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순화교육 입소

직후 3일 내에 12명이 사망하였고, 삼청교육 전 과정에서의 사망자 54명 중 28명이 순화교육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 3. 삼청교육대- 근로봉사 (1980. 9. ~ 1981. 1.)의 위헌·위법성

#### (1) 위법성의 근거

- ①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신체의 자유 침해
  - ② 강제노역의 실시
  - ③ 정당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노동착취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불법성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 인용

### 4. 삼청교육대 - 보호감호(1981. 1. ~ 1983)의 위헌·위법성

#### (1) 상황

삼청교육 입소자들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 5 조에 따라 최초로 사회보호법의 적용대상자가 됨.군부대에 수용되어 근로봉사 중에 있는 미순화자 8, 187 명과 계엄포고 제 13 호에 의해 검거되어 경찰에 유치되어 있던 2,101 명 등 총 10,288 명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하고, 1981. 1. 16. 이 중 7,578 명에 대하여 1~5 년의 보호감호 처분이 결정됨

#### (2) 위법성의 근거

- ① 대법(1997 년판결) -> 사회보호법은 내란행위로서 1979.10.27.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제 10 호, 그리고 1980.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포고령 제 13 호에 따라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 중인 12.5 국회가 아닌 위헌기구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해 제정, 12.18 시행된 것인 이상, 그 자체로서 위헌
- ② 대법원 2018. 12. 28.자 2017 모 107 결정에 따른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성  
→ 일련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제10호, 제13호 발령 등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내란행위 자체에 포섭되어 위헌

## 5.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위헌성

-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라는 이름으로 종래 자유형을 복역여부에 관계없이 순화교육, 근로봉사에 이어 다시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자유형을 복역하는 것에 다름 없어 이는 결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는 이중(거듭) 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
-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 판결 없는 구금
-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 소급효 금지 원칙 침해

## II. 삼청교육대법의 개정필요성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호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근거의 정당함은 발제자가 밝힌 바 아래와 같다.

### 1. 사건피해자 개요

삼청 교육	소집당한	사람:	60,755명
		훈방:	17,761명 등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피해자:			39,742명(직접 피해자)
사회보호법 보호감호 피해자	:		7,578명(청송 2,416포함)

## 2. 사건 피해자의 접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피해자가 760명(2023.7.18.까지 3차에 걸친 310명 진실규명 결정)에 불과

## 3. 결론

광범위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배상 등에 관한 삼청 피해자법 또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

## Ⅲ. 결론: 전면개정에 찬동하며 그 밖의 문제에 관하여

### 1. 피해자범위확정과 관련하여

- (1)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망이나 상이의 피해는 피해자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지만 반인권적 삼청교육의 피해자가 매우 다양하고 넓다는 측면에서 현행법으로는 그들의 피해를 구제할수 없어 너무 협소하다. 따라서 발제자의 제안대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진실규명과 생활보조 및 의료와 사법적 지원 그리고 재발방지까지 포괄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설득력이 있다.
- (2) 피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시 체포구금 당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무고한 시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형법상의 범법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자로 보는 것은 과잉입법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3) 생각건대 설혹 그러한 사람이 섞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고령과 삼청교육이 위헌 위법한 국가폭력으로 판단된 이상 모두 피해자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다만, 절충적으로 국가가 피해자의 범법사실을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5공화국의 국가폭력적 사건들과 관련하여

전두환 쿠데타세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폭력적 불법행위는 삼청교육대 뿐만이 아니다. 5공화국치세아래 수없이 존재한다. 해방이후 625동란전후로 자행된 국가폭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사건별로 진상규명, 사법적 절차보장, 가해자의 사과와 처벌 및 국가의 법적 책임,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들이 유엔 피해자의 권리장전의 지침대로 실행되는 것이 옳바르다. 다만, 피해자 배·보상을 개개의 사건별로 모두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가해행위의 시기와 성격 위법성의 근거, 피해자의 범위,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통괄적인 일반법으로 일원화하고 그 속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증명력을 감안하여 손해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일괄구제를 수월하게 하고 입법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